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2025.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5-2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조성은 외

2025.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제 출 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조성은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문정욱 실장

이으뜸 부연구위원

이시직 부연구위원

연제선 연구위원

전민경 연구위원

이세인 연구위원

선지원 교수

윤호상 변호사

정창우 변호사

진혜원 변호사

목 차

요약문	ix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과 현행 통신법령의 역할 재조명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4
제 2 장 인공지능 생태계와 법제의 연결고리	5
제 1 절 인공지능 생태계 개괄	5
1. 인공지능 기술	5
2. 인공지능 서비스 구조	6
3. 인공지능 생태계 주체	9
제 2 절 정보통신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	12
1.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의 융합: 서비스 구조의 변화와 법적 과제	12
2. 인공지능 생태계와 법제 적용 범위	13
3. 해외 법제 동향과 시사점	17
제 3 장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개발 과정	20
제 1 절 법령안내서 개발을 위한 연구반 구성 및 운영	20
1. 제1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kick-off)	21
2. 제2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28
3. 제3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37
4. 제4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41
제 4 장 전기통신사업법	47

제1 절 「전기통신사업법」 개관	47
1.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47
2. 수범자 및 수범행위 범위	49
제2 절 「전기통신사업법」의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지침	56
1.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제50조)	56
2.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제50조)	62
3.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제32조, 제33조)	65
4.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기준 제안(제32조, 시행령 제37조의2)	70
제5장 정보통신망법	74
제1 절 「정보통신망법」 개관	74
1.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74
2. 수범자 및 수범행위 범위	76
제2 절 「정보통신망법」의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지침	82
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제44조)	82
2. 정보의 삭제요청 등(제44조의2)	90
3. 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	94
4.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제44조의7)	96
5.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제44조의8)	108
6. 청소년유해정보(제41조)	115
7.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제22조의2)	125
제3 절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제안	135
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135
2. 알고리즘 선택권	145
3.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를 이용한 피싱(phishing)	153
제6장 결 론	158
참고문헌	160

표 목 차

〈표 3-1〉 법령안내서 연구반 위원 명단	20
〈표 3-2〉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21
〈표 3-3〉 사전 조사 내용 중 영국과 미국의 해석례	22
〈표 3-4〉 각 법령에 따른 인공지능 이슈와 주요 내용	24
〈표 3-5〉 1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킥오프 회의 주요 내용 요약	28
〈표 3-6〉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초안 목차 구성	29
〈표 3-7〉 인공지능 이슈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상 조문	33
〈표 3-8〉 인공지능 이슈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조문	34
〈표 3-9〉 2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주요 내용 요약	36
〈표 3-10〉 3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주요 내용 요약	37
〈표 3-11〉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내용 규제 체계	39
〈표 3-12〉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초안 주요 목차 구성	42
〈표 3-13〉 「정보통신망법」 원고 세부 조정 사항	44
〈표 3-14〉 4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주요 내용 요약	46
〈표 4-1〉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47
〈표 4-2〉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	48
〈표 4-3〉 부가통신사업자 분류체계 中	51
〈표 4-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6
〈표 4-5〉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 제한 행위에 대한 심의 사례	59
〈표 4-6〉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62
〈표 4-7〉 규정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판단 사례	63
〈표 4-8〉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	66

〈표 4-9〉 행위와 피해자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판결 사례	67
〈표 4-10〉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 의무	68
〈표 4-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면제 사유	69
〈표 4-1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시행령 제37조의2	71
〈표 5-1〉 영리 목적의 의미	77
〈표 5-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82
〈표 5-3〉 ‘권리 침해 정보’의 범위 제한	83
〈표 5-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	84
〈표 5-5〉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요건	85
〈표 5-6〉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의한 명예훼손 쟁점 사례	87
〈표 5-7〉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87
〈표 5-8〉 딥페이크 불법정보 사례와 제44조 연계 법령	88
〈표 5-9〉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의 인격권 보호 ...	89
〈표 5-10〉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의 생성 콘텐츠 관련 기준	89
〈표 5-1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90
〈표 5-1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96
〈표 5-13〉 타 법령상 “유통” 개념	98
〈표 5-14〉 기타 불법정보의 유형	98
〈표 5-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시정요구	102
〈표 5-16〉 방조 책임에 대한 판결 I	104
〈표 5-17〉 방조 책임에 대한 판결 II	105
〈표 5-18〉 영국 Ofcom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상 서한」(2024. 11.)	106
〈표 5-19〉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의 콘텐츠 규율	107
〈표 5-20〉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108

〈표 5-21〉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의 청소년유해매체물	109
〈표 5-2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110
〈표 5-23〉 Snap社 스냅챗(Snapchat)의 My AI 서비스 사건	111
〈표 5-24〉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위한 자율 조치 예시	112
〈표 5-25〉 AI챗봇 서비스의 아동 대상 부적절한 정보 제공 사례	113
〈표 5-26〉 생성형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영국 Ofcom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상 서한」)	114
〈표 5-27〉 「정보통신망법」의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내용	115
〈표 5-28〉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117
〈표 5-2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사업자	118
〈표 5-30〉 Snap社 스냅챗(Snapchat)의 My 인공지능 서비스 사건	120
〈표 5-31〉 「정보통신망법」의 중독성 콘텐츠 제한 규정 도입 방안	121
〈표 5-32〉 특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SNS 플랫폼 사용 제한 법안의 해외 사례	123
〈표 5-33〉 「정보통신망법」의 중독성 콘텐츠 자율규제 방안(안)	123
〈표 5-34〉 「정보통신망법」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관련 내용	125
〈표 5-35〉 AI 에이전트 서비스 사례	132
〈표 5-36〉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관련 개선 방향(안)	133
〈표 5-37〉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관련 개선 방향(안)	133
〈표 5-38〉 딥페이크 피해 현황	135
〈표 5-39〉 딥페이크 사례	136
〈표 5-40〉 「정보통신망법」 제43조의2	137
〈표 5-4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	138
〈표 5-42〉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139
〈표 5-43〉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140
〈표 5-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140

〈표 5-4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141
〈표 5-46〉 「정보통신망법」 제4조, 제4조의2 등	142
〈표 5-47〉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	145
〈표 5-48〉 알고리즘 이슈 관련 사례	146
〈표 5-49〉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6	147
〈표 5-50〉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	148
〈표 5-5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149
〈표 5-52〉 「정보통신망법」 제45조	149
〈표 5-53〉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44조의11	151
〈표 5-54〉 온라인 플랫폼 관련 국내외 법안	152
〈표 5-55〉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를 이용한 피싱 사례	154
〈표 5-56〉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155
〈표 5-57〉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	156

그 립 목 차

[그림 2-1] 인공지능 서비스 구조	9
[그림 2-2]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 벤다이어그램	13
[그림 2-3]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 가치사슬	15
[그림 4-1]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 구조도	61

요 약 문

인공지능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특정 산업 종사자만의 기술이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었다.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 역시 ‘잠재적 위험’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사례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공지능 정책 논의의 중심축을 윤리 원칙이나 선언적 기준에서,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대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였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차원의 인공지능 안전·신뢰 체계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곧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 인공지능 법제는 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집행 체계 구축, 판례와 해석례 축적을 거쳐 실질적인 규율력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라는 두 개의 현행 통신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규율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가 통신망을 통해 제공·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불법정보 생성·유통,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법령의 적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적용의 한계와 해석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금지, 중요사항 고지 의무,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체계, 불법정보 유통 규제 이슈들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기존 판례와 해석례를 분석하여 해당 법조문의 입법 취지, 적용 범위와 제의 기준, 해석의 변화과정, 일관된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사업자들의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안 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조문을 선별하여 조문의 개요, 인공지능 서비스와의 적용 가능성, 해석상의 한계 및 인공지능 서비스 특유의 상황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자살·자해 유도, 경제적 피해·사기,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음란성 딥페이크 생성·유포 등 이용자 권익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정책 수단 필요에 따라 현행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자 대상 법령 해석 명확화에 그치지 않고, 현행 통신관계 법령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규율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인공지능기본법」 체계와의 연계,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및 신규 입법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게 현행 법령상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의무와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율적 준법 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규제당국과 정책 입안자에게는 현행 법령으로 대응 가능한 영역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나아가 새로운 인공지능 법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과 현행 통신법령의 역할 재조명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AI)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계기는 2016년 이세돌-알파고 대결 이후라 할 수 있다. 당시 인공지능은 주로 연구·개발 영역의 기술로 인식되었으며, 정책 논의 역시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 가이드라인, 권고안 등을 마련하며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특정 산업 종사자만의 기술이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었다.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 역시 ‘잠재적 위험’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사례로 가시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대화 서비스와의 상호작용 이후 자해·자살로 이어진 아동 사례,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유도한 사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 사기, 법률 서비스에서의 중대한 오류, 음란성 딥페이크 생성·확산 사례 등이 잇따라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더 이상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인공지능 정책 논의의 중심축을 윤리 원칙이나 선언적 기준에서,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대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였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차원의 인공지능 안전·신뢰 체계를 제시하였다. 중국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

적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곧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 인공지능 법제는 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집행 체계 구축, 판례와 해석례 축적을 거쳐 실질적인 규율력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도 인공지능 서비스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용자 피해는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인공지능 법제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기존의 법적 틀을 활용하여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가 대부분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고 이용되는 온라인 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이슈를 반드시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에서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서비스와 통신 질서를 규율하는 기존 법령 체계에서도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의 방송·통신·온라인 서비스 통합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2024년 공개서한을 통해 명확히 한 바 있다. 이 법은 인공지능을 직접 규율하는 법은 아니지만, 콘텐츠 공유 기능, 검색 기능, 호스팅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기준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현실적인 규율을 시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역시 유사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DSA는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의 운영 방식에 대해 투명성 의무, 위험 평가 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규율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인공지능 규율에 있어 수평적 규제(horizontal regulation)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두 개의 현행 통신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규율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두 법은 각각 전기통신서비스의 공정한 이용과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불법정보 대응의 중심 법제로 기능해 왔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전반을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신, 인공지능 서비스가 통신망을 통해 제공·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불법정보 생성·유통,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적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적용의 한계와 해석상 쟁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현행 법령을 단순히 ‘적용 가능하다’거나 ‘적용 불가능하다’는 이분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문별로 적용 가능성, 해석상의 쟁점,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령 해석을 안내서 형태로 정리하여 실무적 활용성을 높이려 한다. 셋째,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특히 최종 이용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본 정책보고서는 별도 발간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의 연구 과정이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별도 발간된 법령안내서를 실무에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게 현행 법령상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의무와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율적 준법 노력을 지원한다. 둘째, 규제 당국과 정책 입안자에게는 현행 법령으로 대응 가능한 영역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새로운 인공지능 법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실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정책 접근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다.

제2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본 정책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총 6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본 안내서에서 다루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을 고찰하고, 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념과 주요 행위자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법령의 수범자 범위와 이용자 개념을 명확히 한다.

제3장에서는 본 법령안내서 개발을 위해 구성된 연구반의 구성과 운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법률 전문가,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한 연구반은 키포프 회의부터 조문 선정, 쟁점 정리, 해석 방향 조율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논의를 거쳐 안내서를 완성하였다. 이 과정은 본 안내서의 해석이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집단적 검토와 숙의를 거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제4장과 제5장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조문을 선별하여 분석한다. 각 조문은 개요, 인공지능 서비스에의 적용 가능성, 해석상의 한계 및 향후 과제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서비스 특유의 상황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쟁점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기존 법령 해설은 최소화하되, 필요한 경우 부록을 통해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현행 통신관계 법령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규율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다. 아울러 향후 「인공지능기본법」 체계와의 연계,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제시한다.

제2장 인공지능 생태계와 법제의 연결고리

제1절 인공지능 생태계 개괄

1.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기초를 이루는 핵심 기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 수준과 응용 범위에 따라 구현되는 서비스 형태가 달라지고, 이는 곧 법적·제도적 규율 대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 기술을 분류하는 작업은 단순한 기술적 정리가 아니라 이후 서비스 구조와 법제 적용을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핵심 인공지능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규칙과 패턴을 학습하여 예측과 분류를 수행하는 기술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을 포함한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의 근간을 이루며,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편향, 알고리즘의 투명성·설명 가능성 같은 문제들이 규제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는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다. 자연어처리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기술로, 번역, 질의응답, 감정 분석, 텍스트 생성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된다. 언어 데이터는 개인정보, 허위정보, 혐오표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법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분야다.

셋째는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이다. 이는 이미지와 영상을 인식·분석하는 기술로, 얼굴 인식, 자율주행차의 객체 탐지, 의료영상 판독 등에서 활용된다. 시각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감시사회 논란, 안전 규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술적 진보와 함께 법적 통제가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넷째는 로봇틱스(robotics)로, 센서, 제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물리적 환경에서 자율적 행동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실제 환경에서 인간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다.

다섯째는 멀티모달 AI(multimodal AI)이다. 이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해하는 기술로, 예를 들어 텍스트 명령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영상 속 음성과 자막을 함께 분석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되는 만큼 개인정보, 저작권, 표현물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특히 크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발전과 함께 활용 범위가 급격히 확장되었다. ChatGPT와 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쳤으며, 저작권 침해, 허위정보 유포, 딥페이크 확산, 개인정보 유출, 생성물의 책임 귀속 등 첨예한 법적 쟁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특수성과 영향력 때문에 최근 법제 논의에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 인공지능 서비스 구조

앞서 살펴본 인공지능 기술은 개발자에 의해 구체적인 모델로 구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회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응용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이 구분은 기술적 계층을 정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생태계 내에서 어떤 주체가 규제의 대상이 되며 각각 어떤 법적·제도적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 인프라(infrastructure)

인프라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서비스 구현의 기반으로, 데이터,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API 서비스, 정보통신망을 포괄한다.

- 1)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과 성능 개선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그 생산·가공·유통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데이터는 인공지능 성능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축적되며, 이

러한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 2) 반도체: GPU·TPU·NPU 등 고성능 연산 칩으로, 모델 학습·추론의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며 국가적 전략 자원으로 부각된다.
- 3) 데이터센터: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 및 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프라로, 연산 자원인 반도체를 집적하고, 저장·처리를 담당한다.
- 4)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며, AWS, Azure, 네이버클라우드 등이 대표적이다.
- 5) API 서비스: 클라우드 상에서 외부 기업·개발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OpenAI, Google 등은 API 형태로 인공지능 모델을 배포하여 다양한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6) 정보통신망: 5G 및 6G 이동통신망, 위성통신망, 광케이블망 등이 있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연결되는 핵심 기반이다. 다만 온디바이스(on-device) AI, 임베디드(embedded) AI, 독립형(standalone) AI처럼 정보통신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서비스도 존재한다.

나. 서비스 플랫폼(service platform)

서비스 플랫폼은 인프라 위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중개·제공하는 계층이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챗봇(chatbot): 고객 상담, 지식 질의응답, 개인 비서 기능을 수행한다.
- 2) 검색·추천 시스템: 구글 검색, 유튜브 추천과 같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개인 맞춤형 결과를 제공한다.
- 3) 음성비서(voice assistant): 애플 Siri, 아마존 Alexa 등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 4) AI 에이전트(AI agent):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일정 관리, 구매 대행, 업무 자동화 등 복합적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주체로, 차세대 플랫폼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 응용(application)

AI는 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응용 단계에서는 각 산업 도메인에 특화된 서비스가 구현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로보어드바이저, 이상 거래 탐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자리 잡았다. 주식·채권 거래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초단위 거래 신호를 분석해 자동 매매를 가능하게 하며, 로보어드바이저는 개인의 투자 성향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상 거래 탐지는 금융 보안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

의료 분야에서도 영상 판독, 신약 개발, 환자 맞춤형 진료 지원 등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거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환자의 생활습관·유전자 정보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 서비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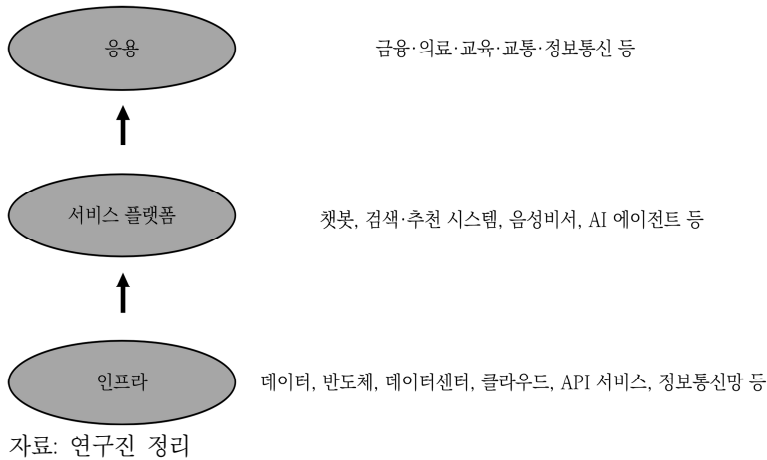
교육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형 학습, 자동 채점, 인공지능 튜터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안하거나, 시험 채점을 자동화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 인공지능 튜터는 학생 개인의 질의응답을 지원하며, 특히 원격 교육 환경에서 교육의 접근성과 품질을 동시에 제고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물류 최적화, 스마트 교통 관리가 대표적이다. 차량에 탑재된 센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실시간 객체 탐지와 경로 탐색을 가능케 하며, 물류 분야에서는 수요 예측·경로 최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은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분석하여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AI-RAN(지능형 무선접속망)과 vRAN(가상화된 무선접속망)은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원을 자동으로 분배함으로써 통신 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탑재를 통해 통신 서비스의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음성통화·문자·검색·일정 관리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 콘텐츠 측면에서 포털·SNS·OTT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림 2-1] 인공지능 서비스 구조



인공지능 서비스 구조는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응용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각각이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프라는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서비스 플랫폼은 이를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가공해 전달하며, 응용 단계에서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구체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인프라-서비스 플랫폼-응용은 단순히 기술적 분류가 아니라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이 작동하는 흐름을 보여주며,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틀을 제공한다.

3. 인공지능 생태계 주체

인공지능 생태계는 단일한 기술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상호 작용하는 구조로 형성된다. 모델을 개발하고, 나아가 서비스를 직접 구현하기도 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최종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경로를 제공하는 유통·매개사업자,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최종이용자가 각각의 층위를 담당한다. 물론, 실제 생태계에서는 한 사업자가 개발, 이용, 유통·매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내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부·공공 부문 역시 중요한 축을 이룬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AI developers)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 생태계의 출발점으로, 모델을 개발해 직접 서비스를 구현하거나, API·SDK·솔루션 등을 통해 모델 기능과 패키지를 외부에 제공하는 주체다. 대표적 사례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OpenAI, Google, Anthropic, Meta, Microsoft 등)과 국내 기업(네이버, 카카오, LG AI Research)이 있다. 이들은 대규모 언어모델, 컴퓨터 비전 모델, 음성 인식 엔진 등 핵심 기술 스택을 구축하고, 이를 자체 서비스에 적용하거나 외부 개발자·기업에게 제공한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에, 데이터 윤리, 알고리즘 편향, 투명성 확보와 같은 법적·사회적 의무를 지게 된다.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AI users)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API·SDK·솔루션 등을 통해 제공하는 모델 기능과 패키지를 자체 서비스에 활용하는 주체다. 금융·의료·교육·교통·정보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사기탐지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병원은 의료영상 판독·신약 개발에 AI를 적용한다. 통신사는 인공지능 상담봇이나 음성비서 서비스를 통해 고객 응대와 이용자 경험을 고도화한다. 이러한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단순한 인공지능 수요자에 머무르지 않고, AI를 활용해 다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성격도 지닌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 때문에 법적 규율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을 형성한다.

다. 유통·매개사업자(intermediary platforms)

유통·매개사업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앱이나 콘텐츠 형식으로 유통·매개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최종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경로로 작용한다.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은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앱이 유통되는 핵심 경로로 기능한다. 포털(구글·네이버 등)은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의 노출 순서와 가시성을 좌우한다.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와 OTT(유튜브, 넷플릭스 등)는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추천과 광고 시스템을 통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통·매

개사업자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며, 동시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콘텐츠 유통, 딥페이크 확산, 광고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은 유통·매개사업자 책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라. 최종이용자(end-users)

최종이용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즉, 최종 이용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다른 주체에 제공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소비·활용하는 개인이나 조직이다. 최종이용자는 인공지능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알고리즘 편향, 불투명한 추천, 개인정보 오남용 등으로 인해 권리와 안전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최종이용자의 보호는 법·제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마. 정부·공공기관

정부와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니지만, 제도적 조정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맡는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클라우드·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활용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불법정보 차단, 시장 공정경쟁 규율 등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또한 인공지능 규제의 국경 초월성을 고려하여 OECD, EU 등과의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혁신 촉진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나, 규제 부재는 사회적 신뢰 상실과 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제2절 정보통신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

1.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의 융합: 서비스 구조의 변화와 법적 과제

과거의 정보통신망은 음성, 영상, 텍스트 등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망은 더 이상 수동적인 전송 인프라가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가 구현·운영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구축한 모델은 API, SDK, SaaS 솔루션 등의 형태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이때 모델의 호출·훈련·갱신 과정 모두 정보통신망을 전제로 작동한다. 또한 다수의 인공지능 서비스(AI 챗봇, AI 에이전트 등)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구동되고, 서비스 앱이나 콘텐츠가 유통·매개(앱마켓, 포털, SNS, OTT 등)되는 과정에서도 정보통신망이 필수적이다. 즉, 정보통신망의 역할은 데이터 전달의 통로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구현과 유통·매개를 가능케 하는 기반 인프라로 변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5G 및 6G 이동통신망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대규모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한다. 반대로 인공지능은 vRAN(가상화된 무선접속망), AI-RAN(지능형 무선접속망)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운영 효율성, 품질, 보안성을 높이며 정보통신망 자체를 지능화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융합은 동시에 법·제도적 과제를 제기한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규율 체계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두 법 모두 제정·개정 당시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더 나아가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통·매개사업자는 직접적으로 포착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정보통신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법체계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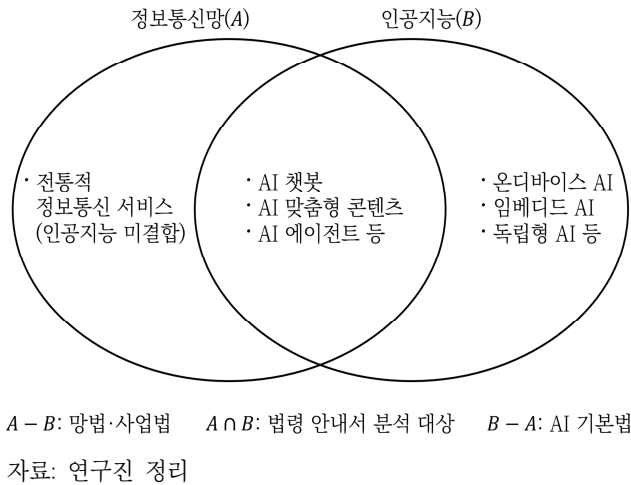
후속 내용에서는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의 교차 영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구조를 도식화하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구현·유통되는 과정을 가치사슬(value

chain) 관점에서 분석한다.

2. 인공지능 생태계와 법제 적용 범위

인공지능을 탑재한 정보통신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만들어내면서 기존 법제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림 2-2]는 정보통신망에 기반한 정보통신서비스(A)와 인공지능 서비스(B)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양자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2]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 벤다이어그램



가. 전통적 정보통신서비스(A-B)

[그림 2-2]의 왼쪽에 위치한 A-B 영역은 인공지능이 결합되지 않은 전통적 정보통신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전의 전화, ISP, MNO나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은 포털·이메일·메신저와 같은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 불법정보 유통 차단,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을 목적으로 망법·사업법에 따라 오랫동안 규율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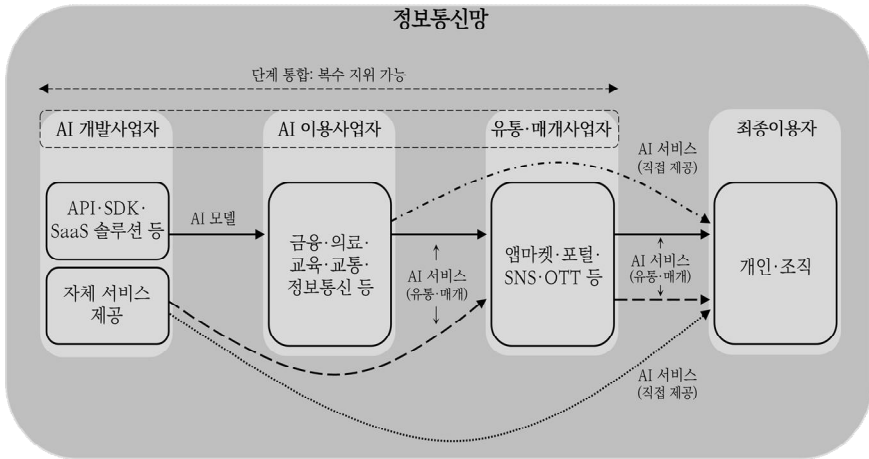
나.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는 인공지능 서비스($B-A$)

[그림 2-2]의 오른쪽에 표시된 $B-A$ 영역은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임베디드 AI(embedded AI), 독립형 AI(standalone AI) 등 정보통신망 없이도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해당한다.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개별 기기에 탑재되어, 외부 서버와 연결하지 않고도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의 인공지능 카메라 보정이나 음성 입력 기능이 이에 해당한다. 임베디드 AI는 특정 하드웨어나 기기에 내장되어 그 장치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지능화하는 인공지능이다. 자동차의 음성 인식 시스템이나 가전제품의 자동 제어 기능이 대표적이다. 독립형 AI는 특정 기기나 응용환경에서 네트워크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예컨대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번역기나 로봇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A \cap B$)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림 2-2] 중앙의 교차 영역($A \cap B$)이다. 여기에 위치하는 AI 챗봇, 인공지능 맞춤형 콘텐츠, AI 에이전트 등은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 기술이 긴밀히 결합된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 정보통신 관련 법제(망법·사업법)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법제와 「인공지능기본법」이 중첩될 경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속에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될지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림 2-3]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 가치사슬



자료: 연구진 정리

라.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가치사슬

[그림 2-3]은 [그림 2-2]의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의 교차 영역($A \cap B$)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최종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단계별 가치사슬(value chain)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2-3]에서 큰 사각형은 정보통신망을 의미하며, 인공지능 서비스의 전 과정이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각화하였다. 해당 가치사슬은 네 종류의 생태계 주체(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유통·매개사업자, 최종이용자)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1) 정보통신망의 역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공지능 서비스 가치사슬의 출발점에 위치한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API·SDK·SaaS 솔루션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API와 SaaS 솔루션은 정보통신망을 전제로 작동하며, SDK 또한 배포·갱신·운영 과정에서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한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인공지능 모델 기능을 배포할 뿐 아니라, 최종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한다(인공지능

개발사업자인 OpenAI의 ChatGPT 서비스 등).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인공지능 모델 기능을 활용하여 고유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한다 (OpenAI의 GPT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한국투자증권의 AI 챗봇 서비스 등).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구현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별도의 유통·매개사업자를 거쳐서 최종이용자에게 전달되거나, 혹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최종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최종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자사 웹 기반의 ChatGPT, AI 챗봇 서비스 등)는 물론, 인공지능 서비스가 앱이나 콘텐츠 형태로 유통·매개되는 경우(앱마켓, 포털, SNS, OTT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가치사슬 전 과정에 내재된 핵심 인프라이며, 이는 곧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망법·사업법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생태계 주체의 역할

[그림 2-3]에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최종이용자에게 도달하는 네 가지의 경로가 제시되어 있다.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유통·매개사업자 → 최종이용자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최종이용자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유통·매개사업자 → 최종이용자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최종이용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어떤 경로로든 가치사슬의 출발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인공지능 모델 기능을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생산 활동에 인공지능이 접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거나, 스스로 자체 서비스를 구현한다.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모델 기능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의 수요자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창출하는 공급자로서도 기능함을 의미한다.

유통·매개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구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앱이나 콘텐츠 형식으로 최종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최종이용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종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통·매개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종이용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다른 주체에 제공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비·활용한다.

3) 생태계 주체 구분의 모호성

[그림 2-3]은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지위를 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구글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Gemini 모델 개발)와 유통·매개사업자(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앱 유통)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MAI-1-preview 모델 개발)인 동시에 인공지능이용사업자(GPT 모델을 활용한 Copilot)이다. 카카오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KoGPT 모델 개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카카오뱅크의 GPT 기반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 그리고 유통·매개사업자(타사 AI 챗봇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매개·제공)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가치사슬의 단계 통합으로 한 사업자가 복수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3. 해외 법제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망과 인공지능의 융합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에 결합하면서 이용자와의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인공지능 개발·이용 단계의 책임
- 온라인 플랫폼(유통·매개사업자)의 투명성과 위험관리
- 이용자 권리 보호 체계 강화

가.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디지털서비스법(DSA)의 이중 프레임

EU는 인공지능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법적 틀로 규율하되, 두

체계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데이터 거버넌스·품질관리·인간감독 요건이 부과되고, 범용 인공지능 모델(GPAD)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 제공, 모델 안전성 확보, 정보 공개 등의 의무가 적용된다.

둘째,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불법정보 대응, 추천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 고지, 정기적 투명성 보고, 위험평가·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대형 플랫폼은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위험 완화를 위해 별도의 연례 리스크 평가 및 감사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즉, EU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이용)과 인공지능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여 규율함으로써, 기술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각각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나. 미국: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적극적 집행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기존 소비자보호·공정거래 법체계를 활용해 인공지능 관련 위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 FTC는 “AI 예외는 없다(No AI exemption)”는 원칙 아래, 허위·기만적 인공지능 마케팅,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용,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 리뷰·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허위 리뷰를 생성한 사건들에 대해 FTC가 직접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자에게도 기존 소비자보호·공정거래 법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캐나다: AI 챗봇 발화에 대한 사업자 책임 인정

2024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민사분쟁조정재판소(BCCRT)는 *Moffatt v. Air Canada* (2024 BCCRT 149) 사건에서, 항공사 웹사이트의 AI 챗봇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챗봇의 발화도 회사의 공식 정보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AI 챗봇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며, 웹사이트의 일부로서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라고 명시했다. 이 판례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챗봇·AI 에이전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전반의 정보 정확성과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 영국: 온라인안전법과 데이터보호 규율의 결합

영국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은 SNS·검색·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 위험평가·감축, 투명성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AI 추천·랭킹·노출 시스템이 결합된 서비스에 대해 위험 기반 접근과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며, 규제기관인 Ofcom이 세부 운영 코드를 마련 중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ICO)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성·설명가능성·편향 최소화 등의 요건을 제시하여, 인공지능 개발·이용 단계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마. 싱가포르: 생성형 AI 거버넌스 모델 프레임워크

싱가포르는 생성형 AI 거버넌스 모델 프레임워크(공개협의안)를 발표함으로써 데이터 관리-개발-배포-사후관리의 전 주기에 걸친 위험평가 및 인증 절차를 제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API형·에이전트형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포함하며, 데이터 거버넌스·안전성·콘텐츠 출처 표시·정렬 관리 등 실무 중심의 규범을 마련했다.

바. 일본: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공정성 확보법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공정성 확보법은 대형 플랫폼을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거래조건 공개, 약관 투명성 확보, 연차 보고 및 자체평가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거래 공정성 및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제도로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추천·광고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 EU의 DSA와 유사하게,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이용)과 인공지능 서비스 유통(플랫폼)을 분리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책임 주체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사례처럼, AI 챗봇 등 이용자 접점에서의 발화와 행위도 사업자의 공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EU·영국·일본은 알고리즘의 투명성, 이용자 통제권, 불법정보 대응 절차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미국은 기존 일반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개발-이용-유통·매개의 전 단계에 걸쳐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권리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개발 과정

제1절 법령안내서 개발을 위한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이번 절에서는 법령안내서 개발을 위해 구성된 연구반을 소개하고, 주요 회의 내용을 밝힌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개발을 위한 연구반은 학계 1인, 법조인 3인, 공공 2인 등 총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반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3-1〉 법령안내서 연구반 위원 명단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위
법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창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공공	김혜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 과장
	조성은	KISDI 연구위원

2025년에는 연구반 전체회의를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적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법령안내서 연구반이 기획되었다.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네 차례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 〈표 3-2〉와 같으며, 상세한 논의 내용은 다음에서 소개한다.

〈표 3-2〉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회차	개최 일자	주요 논의사항
1차	2025. 3. 6.	• 연구반 킷오프 • 법령안내서 배경과 목적 공유 •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이슈* 사전 조사내용** 공유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청소년 과몰입, 아동 보호 등 ** 각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인공지능 이슈 연관성 등 •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제 동향 공유
2차	2025. 4. 17.	• 주요 법안과 수범자에 따른 내용의 재구성 • ‘이용자’ 개념 및 범위 법령안내서 수범자 범위 논의 • 「정보통신망법」 세부 주제별 해석 이슈 논의 • 전기통신사업과 인공지능 서비스의 연관성 모색 • 「위치정보법」 관련 작성 내용 삭제 방안
3차	2025. 5. 13.	• 「정보통신망법」 총론 내용 재구성 방안 논의 •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해석 가능성 여부 •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 조항 및 예시에 대한 규제적 해석 우려 •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조망 및 수범자 범위 논의
4차	2025. 7. 9.	• 인공지능 연관성 강화 방안과 원고에 대한 세부 조정 • 인공지능 이슈 사례 재배열 및 주제별 통합 논의

자료: 연구진 작성

1. 제1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킷오프)

연구반 제1차 전체회의는 3월 6일(목) 오후 2시 HJBC 강남점에서 대면 회의로 진행되었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개발을 주제로, 법조계 전문가와 공공기관 소속 위원 등 5인이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법령안내서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법제 동향 및 윤리 이슈 사전 조사 내용, 법령안내서 내용 구성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령안내서 개발 배경이 공유되었다.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야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이 언급되었다. 또한 이용자 보호 이슈와 관련하여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법령의 해석 범위 및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이 덧붙여졌다. 기존의 법령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이슈를 해석하여 인공지

능 서비스의 역기능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개발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본 법령안내서 작업을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기존 법령의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법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들도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법제 동향 및 윤리 이슈에 대한 사전 조사 내용이 공유되었다.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 동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과 한국의 경우 포괄적 기본법을 통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은 기존 법령에 의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예로, 영국은 인공지능 이슈를 기존 법령에 적극 포섭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이슈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포괄적 기본법을 취하지만, 기존 법령에 따라 인공지능 이슈를 해석한 사례가 있으며 더 나아가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 예로 「정보통신망법」을 일부개정(법률 제20534호)하여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 유포·확산 방지 규정을 도입하였고, 「공직선거법」 또한 일부개정(법률 제 19855호)하여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 표시 및 게시 금지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표 3-3〉 사전 조사 내용 중 영국과 미국의 해석례

국가	세부내용
영국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개 서한 발표¹⁾(2024. 11. 8) － 사이트 또는 앱에 챗봇이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생성형 AI 챗봇이 포함된 경우, 이는 법상 사용자 간 서비스(user-to-user services)에 해당 －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 및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1) Ofcom(2024. 11. 4.), “Open letter to UK online service providers regarding Generative AI and chatbots”,
 <<https://www.ofcom.org.uk/online-safety/illegal-and-harmful-content/open-letter-to-uk-online-service-providers-regarding-generative-ai-and-chatbots>>.

국가	세부내용
미국	• 로보콜 및 로봇 문자 메시지와 관련한 인공지능 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²⁾ 하기 위해 「전화 소비자 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의 해석에 기반한 ‘AI-Generated Robocall & Robotext Rules’ 제안(2024. 8. 8.)³⁾ – ‘AI 생성 통화’를 ‘예측 알고리즘을 포함한 계산 기술 또는 기타 기계학습과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인공 또는 미리 녹음된 음성 또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술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어를 처리하고 발신 전화 통화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 음성 또는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통화’로 정의 – 발신자는 소비자의 동의에 ‘AI가 생성한 음성이나 AI 생성 콘텐츠가 포함된 자동 다이얼 문자 메시지 수신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함. 다만, 장애인의 전화 서비스 접근성 증진에 도움이 된 AI 생성 통화의 경우 「전화 소비자 보호법」 상 일부 요건이 면제됨

자료: 연구진 작성

이러한 동향 속 본 법령안내서는 우리나라의 포괄적 접근 방식이 정립되기 전 규제적 공백을 메꿀 수 있으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효과들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논의되었다. 또한, 기존 법령 검토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타 법령과의 관계 및 규정 간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 또한 충분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 기존 법령과 인공지능 이슈와의 연관성, 법적 해석 타당성이 사전 조사에서 다루어졌으며, 본 회의에서 해당 내용 또한 공유되었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인공지능 이슈는 총 7가지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알고리즘 공정성, 청소년 과몰입, 딥페이크를 이용한 피싱(phishing), 해킹, 데이터 센터 안전이 기술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한 인공지능 이슈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이 있으며, 「방송통신발전법」과 관련한 인공지능 이슈로는 방송통신재난의 관리가

2)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2024. 10. 28.). “Robocall Response Team: Combating Scam Robocalls & Robotexts”. <<https://www.fcc.gov/spoofed-robocalls>>.

3)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2024. 8. 8.). “FCC Proposes First AI-Generated Robocall & Robotext Rules”.

<<https://www.fcc.gov/document/fcc-proposes-first-ai-generated-robocall-robotext-rules-0>>.

기술되었다. 「위치정보법」과 관련하여 개인위치정보의 보호가 인공지능 이슈로 고려되었다. 사전 조사의 세부 내용으로, 각 이슈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적용 가능성, 관련 제재 사항, 검토 필요 사항, 이슈 해결을 위한 법령 개선안 등이 포함되었다. 각 법령에 따른 인공지능 이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4〉 각 법령에 따른 인공지능 이슈와 주요 내용

법령	인공지능 이슈	주요내용
「정보통신 망법」	불법정보의 유통	•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 인공지능 활용 음란물, 명예훼손성 가짜뉴스 등의 인공지능 악용 사례와 관련이 높음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 서의 아동 보호	• LLM 기반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알고리즘 공정성	• 알고리즘 혹은 데이터의 편향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청소년 과몰입	•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를 생성하거나 중독성 콘텐츠가 제공되는 경우, 규정사항을 통한 청소년 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딥페이크를 이용한 피싱(phishing)	• 인공지능에 기반한 딥페이크 또는 딥보이스 기술은 타인을 착오에 빠트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적용의 여지가 있음
	해킹	•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일반인 또한 해킹 툴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인공지능이 해킹 툴 제작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논의 필요
「전기통신 사업법」	데이터 센터 안전	• 인공지능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부터 컴퓨팅 자원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 조치와 관련해 검토 필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기에 기존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관련 법령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서비스 안정성 확보	• 기존 법령에 기재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 인공지능 서비스가 정보통신역무로 해석된다면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법령	인공지능 이슈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법」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 앞선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 재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위치정보법」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개인 위치정보 침해 가능성을 내재함

자료: 연구진 작성

본 회의에서는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법령안 내서의 내용이 향후 입법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표시 방식, 시각적 표현, 의무 부과 대상 서비스 범위 등 다양한 세부 쟁점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내외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 서비스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며, 정보의 제공 또는 매개라는 전기통신역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공유되었다.

셋째, 인공지능과의 대화 과정에서 생성된 텍스트가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생성된 경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불법정보·청소년유해정보·음란물 등에 대한 필터링 체계 구축 여부와 모니터링 조치 이행 여부 등이 사업자의 책임 판단 과정에서 주요 고려 요소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되었다.

넷째, 청소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유해정보는 불법정보보다 넓은 개념으로, 음란성·폭력성 등 사회적·규범적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판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의와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를 활용한 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속이는 행위’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관련 판례와 법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

적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례 및 판례 조사를 수행한 후 후속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법령안내서의 내용 구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반은 본 안내서가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를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자료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전체 구성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법령별 해설을 제시한 후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해당 사례에 적용되는 법령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사례 중심 구성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현재 인공지능 관련 판례와 검증된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특히 아직 법적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안내서가 선제적으로 해석을 제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상반된 판례가 등장할 경우 안내서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반은 현시점에서는 법령별 해설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판례와 이슈 사례를 보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직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사례 발굴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추가 조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법령에 대한 총론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총론에서는 주요 수범자의 범위와 핵심 용어의 정의 및 해설을 제공하여 독자가 개별 조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의 개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정의와 같은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사기행위 등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설을 함께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본 회의에서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세부 용어 정리는 후속 회의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법령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이슈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

안과 한계 및 개선 필요성만을 설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법령안내서의 성격과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제도적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전 조사 결과 중 일부 주제가 본 법령안내서의 범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었다. 먼저 데이터센터 안전 문제는 인공지능 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현행 법령을 통한 해석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안내서의 수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발전법」 관련 내용 역시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재난과 관련된 규율은 주로 기반시설 운영자와 재난 대응 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라기보다 재난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본 안내서의 주요 논의 범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타 논의사항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인공지능 기능이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기기 내에서만 작동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본 법령안내서의 검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안내서에서 직접적인 법적 해석이나 규율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에이전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서비스 유형에 대해 단정적이거나 경직된 해석을 제시하기보다는 향후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관점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본 법령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참고자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시된 내용의 수용 여부와 활용 방식은 개별 사업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반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각 전문가는 추가 조사와 함께 법령안내서 초안 작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 <표 3-5>

와 같다.

〈표 3-5〉 1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킷오프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주요 쟁점	세부 논의사항
안내서 배경과 목적	• 인공지능 서비스의 보편화와 이용자 보호 이슈 대두 • 기존 법령과 인공지능 서비스의 관계성 모색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요 증가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역기능 방지 • 관련 규제들 속 공백 제거 •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들의 혼란 방지 • 기존 법체계의 포괄성 검토 및 개정 방향 모색
사전 조사 내용	•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 동향(접근법과 해석 사례) • 안내서 필요성 모색 • 법령 개선안 도출 방향과 고려 사항 •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법」, 「위치정보법」에 따른 인공지능 이슈 구분
논의 필요 사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포함 여부 • 인공지능과 일대일 대화 내용 또한 불법정보에 포함하는지 여부 • 인공지능 서비스가 음란 텍스트를 생성한 경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의 정의 및 범위 •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를 통해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의와 종류
내용 구성 방안	•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물 • 인공지능 관련 법적 사례 나열 후 관련 법조항을 기술하는 방식과 주요 법조항에 대한 일반 해설이 후 관련 사례를 붙이는 방식 • 주요 수범자와 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해설 추가 • 세부적인 개정안을 구성하는 대신, 대략적인 개정 방향만을 언급 • 관련성이 미흡하거나, 한계가 명확한 법령 내용 삭제

자료: 연구진 작성

2. 제2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연구반 제2차 전체회의는 4월 17일(목)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킷오프 회의 이후 각 전문가는 분담된 영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행하고, 담당 법령 및 조문에 대한 해설 초안과 인공지능 관련 주요 쟁

점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작성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각 전문가가 작성한 초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법령 해설 및 인공지능 이슈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법령안내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 구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별 검토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회의는 법령안내서의 목차 구성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당시 논의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초안의 목차는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초안 목차 구성

1. 정보통신망법

1) 총론

- 정보통신망법상 입법 취지와 목적
- 본 안내서에서의 수범자 범위
- 인공지능 서비스의 단계별 본 해설서의 적용

2) 개별 조문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 이용자 오남용 콘텐츠의 유통에서의 문제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청소년 과몰입(청소년 유해정보)
- 투명성
- 알고리즘 공정성
-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를 이용한 피싱(phishing)

2. 전기통신사업법

1) 총론

- 금지행위 규정의 입법취지
- 주요 개념 및 정의

2) 전기통신사업법의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지침

-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자료: 연구진 작성

본 회의는 「정보통신망법」 총론 구성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는 인공지능 산업 밸류체인을 시각화할 필요성이었다. 연구반은 법령안내서에서 다루는 주요 법 조항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어느 단계에 적용되는지, 어떠한 사업자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경우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선행될 경우 법령안내서 전반의 서술 범위와 대상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회의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정의와 법령안내서의 수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어느 수준까지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인공지능 서비스 유형, 사업자 분류, 기술적 구성요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폭넓게 다루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정된 정의나 분류체계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반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상세한 정의와 분류에 집중하기보다 법령안내서의 발간 목적에 보다 충실한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온디바이스 AI, 로컬 기반 인공지능, 인공지능 서비스를 매개하는 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 형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내서는 변화하는 기술 형태 자체보다는 이용자 보호라는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유지되어야 할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도 인공지능 산업의 빠른 변화로 인해 모든 서비스 유형과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기술 분류나 산업 구조에 집중하기보다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 and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법령을 해설하는 것이 법령안내서의 지속적인 활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구반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구조를 중심으로 이용자, 사업자 및 수범자의 범위를 정의하기로 하였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의 세부 목차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불법정보의 유통,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이용자 오남용 콘텐츠 유통 문제 등 주요 주제는

모두 정보의 '유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성격을 가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각 조항은 다루는 정보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율한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주제를 '유통'이라는 공통된 틀 아래 통합하여 설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다만 각 주제별로 발생하는 인공지능 관련 이슈와 사업자의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개별 쟁점의 특수성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연구반은 이에 대한 절충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다른 주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법령안내서의 전체 구성 체계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서비스의 공유 기능에 대한 법적 쟁점도 논의되었다. 회의에서는 해외 일부 정책이 생성물을 외부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정보 유통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공유 기능은 이용자 간 정보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불법정보의 유통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법령안내서에는 공유 기능이 수반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을 고려해 보기로 하였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접근권한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스마트폰 등 기기에 인공지능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기능 제공 과정에서 별도의 고지 또는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행 제도상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능의 성격에 따라 단순 고지만으로 충분한 경우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지 및 동의 의무의 범위는 해당 기능이 기기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 기능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인공지능 기능이 기기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법령안내서에서는 접근권한 고지와 이용자 동의에 관한 관련 규정의 존재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용어 및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반은 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에서 사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정보, 중독성 콘텐츠 등의 개념이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청소년의 과도한 몰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중독성 콘텐츠’라는 개념은 아직 법적·사회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법령안내서에서는 ‘청소년 과몰입’이라는 표현보다 현행 법체계와의 연계성이 높은 ‘청소년유해정보’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사업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청소년에게 제공된 경우에도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와 행정사례를 추가 조사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책임 범위와 판단 기준을 보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보 유통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와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여부나 유통된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수준은 아직 법적·정책적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으로, 법령안내서에서 구체적인 규율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보의 신뢰성과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이라는 법의 목적에 주목하여, 사업자가 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인공지능 관련 제도 환경 속에서 사업자들에게 기본적인 판단 기준과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타 논의사항으로는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관련 이슈가 다루어졌다. 연구반은 이러한 문제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도 함께 논의하였다. 다만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를 활용한 사기, 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령안내서에서도 해당 문제를 주요 이슈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의 세부 주제 가운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알고리즘 공정성, 딥페이크·딥보이스 기반 피싱 문제는 현행 법령 해설뿐 아니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주제를 별도로 묶어 개선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새로운 상위 목차 구성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정보통신망법」 관련 목차와 서술 체계를 재구성하기로 하였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인공지능 이슈와 관련 법 조항은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인공지능 이슈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상 조문

인공지능 이슈	「정보통신망법」 조문 내용
불법정보의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중략)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알고리즘 공정성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청소년 과몰입	정보통신망법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후략)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피싱(phishing)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연구진 작성

「전기통신사업법」과 「위치정보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연구반은 두 법령이 이용자 보호보다는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성격이 강하며, 현행 조문을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특유의 쟁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위치정보법」의 경우,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인공지능 서비스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쟁점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반은 「위치정보법」을 본 법령안내서의 주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인공지능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대표적인 이슈 사례를 발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의 사례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조문의 취지와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인공지능 이슈와 주요 조문은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인공지능 이슈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조문

인공지능 이슈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내용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후략)

인공지능 이슈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내용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자료: 연구진 작성

본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법령안내서의 추가 수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세부 주제의 재구성, 법령 중심 서술과 사례 중심 서술 간의 균형, 법령안내서 전체를 아우르는 총론의 신설, 그리고 법령별 총론의 명칭 및 역할 정비 등이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상위 목차를 구성하여 세부 주제 간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령안내서 전체를 관통하는 총론을 별도로 마련하여, 급변하는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원칙과 안내서의 목적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만으로는 모든 인공지능 이슈를 포괄하기 어렵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총론에서 명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령별로 구성되었던 총론은 ‘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주요 개념, 수범자의 범위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비하

기로 하였다.

한편, 법령안내서의 서술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연구반은 법조문 중심의 서술이 사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오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정보통신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 서비스 특성이 현행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되짚는 기능에 한정해야 한다는 점, 기존 판례 등 선례를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점 등 이번 안내서 개발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법령안내서가 법조인이 아닌 사업자가 본다는 점에서 어려운 법적 용어를 가급적 삼가고 쉬운 용어로 풀어내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총론 등에서 일반 독자의 이해를 이끄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연구반은 법령안내서의 성격과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전체적인 내용 구성과 서술 체계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본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2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주요 내용 요약

논의 사항	세부 논의사항
「정보통신망법」 총론	• 인공지능 산업의 밸류체인과 생태계 설명과 접근 방식 • 이용자의 범위 및 수범자 개념에 대한 지침이 필요 •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세부 구분 필요 •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른 서술 방향성 수립
「정보통신망법」 세부 주제	• 불법정보의 유통이 이용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보는지 검토 필요 •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 해석 방식 • 중독성 콘텐츠가 청소년 유해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유통되는 경우,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개선안과 기존 법령의 중복 문제 • 딥페이크 관련 문제와 사업자 계도를 통한 해결 가능성 여부
「전기통신사업법」과 「위치정보법」	• 「전기통신사업법」을 인공지능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해석 가능한지 여부 •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적 성격으로 인한, 인공지능 서비스 규제 시도 오해의 가능성 • 「위치정보법」과 인공지능 서비스와의 연관성 문제
안내서의 성격과 내용 구성 방안	• 「정보통신망법」의 세부 주제 중 법령 개선안 중심인 주제를 별도의 목차로 구성하는 방안 • 사례 중심 기술 방식으로 재구성 제안 • 법령안내서의 총론 내용 구성과 각 법의 총론 구분

자료: 연구진 작성

3. 제3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제3차 전체회의는 5월 13일(화)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전체회의 이후 연구반 위원들은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안내서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담당 분야별 원고를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회의는 이러한 수정본을 토대로 주요 쟁점과 편집 방향을 재검토하고, 법령안내서의 내용 구성과 서술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3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표 3-10>에 정리한 바와 같다.

<표 3-10> 3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주요 내용 요약

논의 사항	세부 논의사항
「정보통신망법」 개관	• 주요 내용에 대한 첨언 • 타 법률과의 관계 및 비교 추가 • 정보통신서비스와 인공지능 서비스의 관계 • 서술 방식과 내용의 재구성
「정보통신망법」 세부 주제	• 권리 침해 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한 임의의 임시조치 가능성 논의 • 유통의 범위와 해석 • 제재 규정에 대한 대응 안내 • 투명성과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주제 세분화 및 재구성
「전기통신사업법」	• 이용자 보호 평가 업무 안내 및 내용 수준 • 「전기통신사업법」 상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지는 특수성 부재 • 금지 조항 및 예시에 대한 규제적 해석 우려
안내서의 성격과 내용 구성 방안	• 세부 주제와 조문에 대한 목차 재구성 • 문장의 어미와 서술 형태 통일 •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에 대한 서술 필요 •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현황과 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한 시각화 필요

자료: 연구진 작성

본 회의는 이전 제2차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법령안내서의 주요 목차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논의는 「정보통신망법」 개관, 「정보통신망법」 세부 주제, 「전기통신사업법」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관의 내용 구성과 서술 방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정보통신망법」 개관과 관련해서는 내용 보장 및 재구성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연구반은 인공지능 서비스와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에서 「정보통신망법」이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함께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와 콘텐츠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로 규율하는 법조문을 다루게 되는데,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기본 원칙 및 제도적 기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규율 대상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아직 마련 중인 상황이어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다.

아울러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보완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방향이 검토되었다.

한편 개관의 서술 형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연구반은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는 개조식보다는 서술형 구성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보다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개별 법령의 개관이 아닌 전체 총론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체계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편집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제44조의3의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과도한 사전 통제나 검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챗봇과 이용자의 대화 내용에 개입하여 생성된 텍스트를 검열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보고 현실적으로 무리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반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율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제도를 통해 대응 가능한 영역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이용자 입력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나 유해정보 차단 장치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법령에도 다양한 예방·대응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조문을 통해 해결 가능한 범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도 규율 공백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 위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현재 해당 조항들(임의의 임시조치 관련)은 현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학계의 동향을 공유하였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산출된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을 때, 제44조 내지 제44조의3(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관련 인공지능 사업자의 개입 및 조치 정도에 대한 논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생성물의 악용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자체 판단 및 삭제 등)를 취할 수 있다는 관점 등이다. 그러나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인공지능 생성물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충분한 경험치가 축적될 때까지는 이용자의 신고에 의한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참고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권리침해보와 불법정보 관련 규제는 아래 <표 3-11>와 같다.

<표 3-11>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내용 규제 체계

구분	권리침해정보(제44조)	불법정보(제44조의7)
의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음란정보, 사행성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규제 방법	• (제44조의2) 권리침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 •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 (제44조의7 제2항·제3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자료: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유통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은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한 유통 방식 및 특성에 대한 사례에 집중하여 해설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 위원은 실물의 유통보다는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며, 어떠한 유형의 콘텐츠든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유통과 동일한 효과

를 가져올 수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주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넣은 내용에 따라 생성되는 정보가 불법정보, 권리 침해 정보 혹은 여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결론적으로 유통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것은 경계하고, 문제가 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제재 규정과 법령 준수 방법을 제대로 안내할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세부 주제 중, 투명성, 알고리즘 공정성, 청소년 유해정보,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를 이용한 피싱, 접근권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 위원은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상황과 관련 입법 논의 현황을 설명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기존 법령의 입법 취지와 현재의 기술 발전 상황의 차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에 세부 사항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무리하게 해당 법령의 적용에 맞추기보다 법령의 범위를 넓히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대안이 논의되었다.

이어 투명성과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록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해당 개념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일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관련 의무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만큼 법령안내서의 검토 주제로 포함되었다. 다만 연구반은 「정보통신망법」의 기존 입법 목적과 규율 체계를 고려할 때, 투명성 및 알고리즘 공정성을 현행법 조문과 직접 연결하여 해석하거나 규율 대상으로 포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주제를 다루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이 논의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해당 주제를 다룰 경우, 투명성보다는 알고리즘 공정성과 편향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알고리즘 공정성은 데이터 편향이나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및 권익 침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반면, 투명성은 설명 가능성, 정보 공개, 의사결정 과정의 이해 가능성 등 보다 폭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연구반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취지와 연계하여 해당 주제를 다룰 경우, 투명성 전반을 포괄하기보다는 데이터 및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러

한 관점에서는 추천 서비스의 주요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추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후, 두 번째 주요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논의는 이용자 보호 평가 업무로 시작되었다. 기존 부가통신서비스에 인공지능이 탑재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이용자 보호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법령안내서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기존 평가 항목과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기존 평가 항목과 기준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도 검토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율하는 사업자 개념에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수성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떠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금지 규정은 부당한 요금 청구나 계약상 불이익 방지와 같이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유료 구독 서비스의 계약·결제 관련 문제 등은 일정 부분 포섭할 수 있지만, AI가 생성한 허위정보, 편향된 결과 제공, 과도한 의존 유도과 같은 특유의 위험은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 즉, 기존 법체계를 통해 해결 가능한 영역과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각 조문의 세부 목차에 대해서는 이슈 제기, 규율 필요성, 관련 입법 현황, 관련 한계 및 문제의 순서로 구성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총론 및 개관, 이후 본문 서술 형식의 통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및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설명, 문제 발생 지점에 대한 시각적 이해 자료 추가 등이 논의되었다.

4. 제4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4차 전체회의는 7월 9일(수)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차 회의 이후로 매 회의마다 전체 위원들이 초고를 수정해 왔으며, 본 회의는 세 번째 수정을 거친 수정본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위원들이 작성한 원고를 취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다

음 <표 3-12>와 같은 목차가 구성되었으며, 본문 내 인공지능과의 연관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이슈와 사례 추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 회의가 진행되었다.

<표 3-12>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안내서 초안 주요 목차 구성

주요 목차	하위 목차 구성
I. 법령안내서 총론	1. 본 안내서의 의의와 목적 2. 현 이용자 보호 규정의 개요 3.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역무 환경의 변화 4. 새로운 이용자 보호 환경 고려의 필요성과 본 안내서의 역할 5. 안내서가 다루는 주요 개념
II.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II.1. 개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2. 본 안내서에서의 수범자 범위 3. 인공지능산업에서의 「정보통신망법」의 역할 - II.2. 「정보통신망법」의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지침 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제44조) 2. 정보의 삭제요청 등(제44조의2) 3. 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 4.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제44조의7) 5.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제44조의8) 6. 청소년유해정보(제41조) 7.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제22조의2) - II.3.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제안 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2. 알고리즘 선택권 3.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를 이용한 피싱(phishing)
III. 「전기통신사업법」	- III.1. 개관 1.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2. 본 안내서에서의 수범자 범위 3. 인공지능산업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의 역할 - III.2. 「전기통신사업법」의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지침 1.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제50조) 2.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제50조) 3.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제32조, 제33조) 4.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32조, 제37조의2)

자료: 연구진 작성

먼저, 본문과 인공지능 이슈에 대한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하위 주제 별로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적용가능성'이라는 소목차 추가 방안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제44조)'의 하위 목차에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적용가능성'을 두어 인공지능 서비스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다. 이때 인공지능 관련 이슈 사례와 판결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완성도 있는 안내서가 될 수 있겠으나 실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데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또 아직 기소되지 않은 실제 윤리 침해 이슈 사례를 안내서에 기재하면 법적 조치를 강요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었다. 이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제 사례에 기반한 가상 사례를 구성하거나 가급적 사례는 다루지 않는 쪽으로 논의 방향이 진행되었다.

이어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 항목이 기존 법령 해설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본 해설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부가통신서비스 범위 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법령 해설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항목에서는 단순히 기존 규정의 적용 여부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특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로써 해당 항목은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목차 구성에 관한 논의에 이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분류와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관련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정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는 비영리적·개인적·소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용자를 상정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이 영리적 목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 행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령 안내서에서 다루어야 할 이용자의 범위와 그 적절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반 위원들은 각자 담당한 원고에 대한 검토와 보완 논의도 진행하였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는 제44조의 불법정보 유통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다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해설 방향, 임의적 임시조치 제도의 설명 범위, 아동 보호 관련 법적 연령 기준의 근거 제시 방식, 그리고 주제별 원고 분량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세부 조정 사항과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 <표 3-13>에 정리하였다.

<표 3-13> 「정보통신망법」 원고 세부 조정 사항

조정 필요 사항	관련 논의 내용 및 개선 방향
제44조의 제재 규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 관련 책임 부담 가능성 언급 여부	• 제44조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루는 조항이 아니기에, 상세한 기재는 불필요 • 다만, 취지에 관한 부연 설명을 통해 주의 환기 필요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에 대한 해설 여부	• 필요시 언급 가능 • 다만, 해설 근거가 미흡하여 선제적 판단보다는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이 필요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한 논의	• 임의의 임시조치를 권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불법 정보 생성에 관한 주의와 경계를 권유하는 방향의 서술이 필요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연령 기준 근거	• 만 14세라는 연령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개선 사항으로 기재
각 주제에 대한 원고 분량 조절	• 제44조의7에 대한 분량 조절 필요 • 유통의 정의 또한 방법의 개관으로 이동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와 절차, 처분 등에 관한 분량 조절 필요

자료: 연구진 작성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논의의 첫 번째 대상은 제50조(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였다. 연구반에서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성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도 다시 논의되었다. 최근 ChatGPT가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환불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유료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부담하는 일반적인 사업자 책임과 관련된 사례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다만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유료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수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부가통신서비스에 관한 기존 규제 체계 속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경우 작성 항목의 조정도 필요하였다.

전반적인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해설 방식에 대한 구성안을 다시 한 번 논의하였다. 기존의 조문 중심 서술 방식 대신 정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와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독자가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조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쟁점까지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사례를 △불법·유해정보 유통 △앱 접근권한 △피싱 등으로 구분하여 재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편집 과정까지 계속 검토하면서 가장 적합한 안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본 법령안내서의 주요 조문은 아니지만 관련 조문으로 언급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를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사례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뿐 아니라 제71조와도 연계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1조를 별도로 해설하지 않더라도 본문에 관련 내용을 담아내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특히 특정 사례를 실례로 들 수 있는 경우 여러 관련 법조문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사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제4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의 주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각 전문가는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 수정 및 추가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KISDI는 이를 취합하여 전체 원고의 구성과 세부 내용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제4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 <표 3-14>와 같다.

〈표 3-14〉 4차 법령안내서 연구반 전체회의 주요 내용 요약

논의 사항	세부 논의사항
인공지능 연관성 강화 방안	• 세부 주제 내 인공지능 관련 하위 목차 구성 • 인공지능 관련 하위 목차 내용에 대한 세부 조정 • 인공지능 이슈 사례 추가 방안 논의 •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분류 및 법령 적용 범위 분류 논의 • 서술 방식과 내용의 재구성
「정보통신망법」	• 제44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 관련 책임 부담 여부 • 새로운 유형의 인공지능 서비스 해설 범위 •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슈와 서술 방향 • 아동에 대한 법적 연령 근거 탐색의 필요 • 원고 분량 조절 논의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상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지는 특수성 부재 • 금지 조항 및 예시에 대한 규제적 해석 우려
안내서의 구성과 향후 진행 논의	• 공통 키워드 통합 제안 • 서술 문체 통일 및 내용 재구성 논의

자료: 연구진 작성

제 4 장 전기통신사업법

이번 장에서는 법령안내서 연구반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주요 검토 결과를 다룬다. 이를 통해 최종 법령안내서로 재구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어떠한 법적 해석과 쟁점이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최종 안내서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 1 절 「전기통신사업법」 개관

1.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전기통신사업법」의 제정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통신 이용자의 편의 도모로(「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제정 이후 경쟁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전기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촉진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령으로 기능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도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입법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모두를 규율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사항이라는 것이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그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상호접속, 공동이용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관련하여서는 보편적 의무 제공, 이용약관 신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등을 두고 있다.

〈표 4-1〉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통신 이용자의 편의도모라는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

구분	내용
진입 규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은 ① 일정 능력과 자격이 되는 사업자만 통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규제와 ② 통신사업자가 특정 개인 또는 기업에게 좌우되지 않도록 소유/점업 규제를 두어 건전한 통신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공정경쟁 규제	통신사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보유여부에 따라 사업자 경쟁력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접속, 설비의 공동이용과 같은 공정경쟁 규제를 두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용자 편의도모 규제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합리적 요금 수준 유지, 나아가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보편적 의무 제공, 이용약관 신고 및 관련 금지행위, 손해배상 등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규제를 두고 있음
전기통신설비 규제	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두는 동시에 통신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기통신설비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음
금지행위 규제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 간 또는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행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업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연혁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은 1981년 3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설립·운영·감독을 위한 법령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전기통신의 정책 기능과 사업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정되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이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적정 경쟁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사항 등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방송통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관계 기관들과의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에는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허가제도, 이용약관 인가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설비제공, 각종 금지행위 등 관련 제도가 도입, 개선, 보완되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2010년 전면 개정 이후에도 전기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허가제 완화,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제도 정비, 인앱결제 강제 방지 관련 금지행위 도입 등 수차례 개정되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확산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이용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를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보호 이슈와 사업자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증진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과의 관계 역시 향후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수범자 및 수범행위 범위

가. 수범자 범위

「전기통신사업법」은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대부분의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된다.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 제8호),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그리고 “전기통신역무”는 기

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되어 각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가 된다.

다만 「인공지능기본법」 상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제2조 제6호). 이러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가 곧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역무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일부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러한 전기통신역무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거 일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해당 서비스들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개념적으로는 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 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에 따라서 부가통신 서비스는 특정한 범주가 존재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서비스의 혁신에 의해 다양한 부가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통신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및 결과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디지털 인프라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다양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금지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대다수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 즉, 통신 환경을 전제하여 제공되고 있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축적·가공하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인공지능 기능이 기기 내에 내장되어 운용되는 등의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부가통신역무의 일종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3〉 부가통신사업자 분류체계 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 사업자 예시 (대표서비스* 기준)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AI	(27) 데이터 처리 솔루션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	포스코아이씨티, 와이즈넷 등
		(28)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현대무백스, 아이티센 등
		(29)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코리아크레딧뷰로, 미디어채널 등
		(30) 데이터·AI 기타	카카오브레인, 진코퍼레이션 등

* 복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서비스 1개를 선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4. 7.).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경과 및 결과』.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의상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지니는 자는 필연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지니지는 않고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게시판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홈페이지 운영자 등)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가 되지 않는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이용자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하고 있어서 ① 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의 보호와 ② 최종이용자(end user)가 아닌 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에서 이용자 범주는 개념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실제적 이용자’, 이용계약 체결 과정에 있는 ‘계약체결상의 이용자’, 향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잠재적 이용자’, 자신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이용자’ 및 별도의 이용계약 없이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 이용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용자의 범위를 문언 대로 엄격히 해석할 경우 아직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또

는 계약 체결 과정에 있는 이용자의 이익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지행위 세부유형별 행위규제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 개념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업자가 이용하는 경우 즉, B2B 관계에서의 이용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정의 규정은 문언상 이용자의 범위를 최종이용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 간에도 사업자의 규모, 종류 또는 시장 내 지위 등에 따라 상대방 사업자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⁴⁾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도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로 포섭하여 금지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설된 앱마켓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규정(제9호~제11호)의 경우 최종이용자 뿐 아니라 앱마켓사업자와 앱마켓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앱마켓을 이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나. 수범행위 범위

1)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의미

최근 CP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내 규모, 영향력 등이 폭발적으로 커진 상황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은 초고속인터넷 접속 사업자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 구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내 규모,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이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시장이 융합하고 그 시장에서의 규제가 사전적·구조적 규제에서 사후적·행태적 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가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금지행위란 행정법령에서 수범자에게 부과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작위 의무를 의미하며, 법령에서 부과하는 일정한 부작위 의무인 금지행위와 유사한 개념으

4) 방송통신위원회 제2010-17-074호.

방송위는 KT가 NHN에게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전용회선을 제공·제안하고 NHN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선설비를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이용자 이익저해 규정을 근거로 제재한 바 있음.

로 강학상 명령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금지가 있다.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구분하며,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명령적 행정행위에는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하명,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허가과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작위의무, 급부의무 또는 수인의무를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인 면제가 있으며, 명령적 행정행위인 하명 중에 일정한 부작위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법령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수범자가 행정법령상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수범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줌으로써 행정법규나 행정법령상 의무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2) 금지행위 규정의 입법취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규정, 디지털콘텐츠 거래 시 적정 수익배분 규정 및 신설된 앱마켓사업자 관련 규정을 제외한 금지행위들은 모두 동법상 존재하는 별개의 규제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는 규제의 근거가 다른 다양한 행위들을 단일한 금지행위 조항으로 포괄하고, 이들 행위들에 대한 시정조치 역시 단일한 조항(제52조)에 망라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금지행위와 이용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금지행위로 나눌 수 있다. 공정경쟁과 관련된 금지행위로는 제50조 제1항 제1호(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 부과)·제2호(협정체결의 부당한 거부 등)·제3호(정보 등의 부당 유용)·제4호(이용요금 등 부당 산정)·제6호(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 결정·유지)·제7호(디지털콘텐츠 적정 수익배분 거부 등)가 있으며, 이용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금지행위로는 동항 제5호(이용자 이익저해)·제5호의2(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제8호(선택앱의 삭제 등 부당 제한)·제9호(특정 결제방식 강제)·제10호(부당한 심사 지연)·제11호(부당한 모바일콘텐츠등의 삭제)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방통위 또한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사건에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경쟁 저해성을 보충적

기준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⁵⁾

다. 금지행위 규정의 특징

금지행위 조항은 1996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도입되었는데,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은 그 실질적 위법성 요건으로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각 금지행위 조항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은 직접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후 2002년 개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것’을 실질적 위법성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로 열거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에 더해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비로소 해당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율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두34470 판결 참조).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의 금지행위 중 일부는 해당 행위의 존재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가 법문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경쟁 질서 또는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성격을 가지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두34470 판결 참조). 부당성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금지행위로는 제50조 제1항 제1호(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 부과)·제2호(협정체결의 부당한 거부 등)·제3호(정보 등의 부당 유용)·제4호(이용요금 등 부당 산정)·제6호(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 결정·유지)·제8호(선택앱의 삭제 등 부당 제한)·제9호(특정 결제방식 강제)·제10호(부당한 심사 지연)·제11호(부당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가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 제2008-41-223호.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한 사례 중 가입자 모집, 해지 방어 등의 목적으로 감면한 사례는 타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려는 이용자와 다른 일반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보면서도, 일부 이용자에게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일부 이용자의 편익마저 감소될 우려와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 경쟁을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

라. 인공지능산업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의 역할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제5조 제1항).

일반법이란 일정한 분야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반면 특별법은 특정한 대상, 행위 또는 분야에 대하여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마련된 법률을 말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이 규율하는 사항 중 특정 영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인공지능 산업 일반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관련된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기통신서비스로 평가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러한 범주 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해 입법된 법령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사업자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이에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인공지능기본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 2 절 「전기통신사업법」의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지침

1.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제50조)

가. 개요

〈표 4-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677호)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정은 법상 그에 대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사전적 의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사후적 행위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별표4]에 규정된 유형에 포섭된다는 사실 외에 이용자 이익 저해성과 현저성 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며, 이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유형도 상당히 다양하다.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하여 B2C 관계에서 최종이용자의 이익 저해, 그리고 B2B 관계에서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나.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1)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 행위(시행령 [별표4] 제5호 가목)

이용약관상 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이용약관의 신고 단계에서 사전적인 규범적 통제를 통하여 규제하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의 금지행위 유형(「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으로 규제하는 한편,

①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거나, ② 요금 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

하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규제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용 요금의 청구 및 납부를 전제로 하여 제공되는 경우 ①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이 청구되거나, ② 이용자가 사전에 안내 받은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별표4]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고,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료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 이용자를 상대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구독 시점에서 약관 등을 통해 안내한 요금의 수준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본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규율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현재 다수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기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역무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융합하여 차별화된 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과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명확히 분리되어 청구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는 본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통신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료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점, 유료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와의 약관 체결을 통한 계약 관계가 전제되므로 해당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로 포섭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으로 관련 행위를 규율하는 데 특별히 한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이용 관련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나목에서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① 이용자 가입의사 미확인 계약 체결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기통신

사업법」은 사전 의무 부과 규정을 두어 이용계약상 이용자와 실제 이용자를 일치시키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료 상품으로 이용자를 유인한 후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명의가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법인 선불 이동전화를 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대량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⁶⁾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 의사 미확인 계약체결

추가적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입자 의사 확인 없이 부가서비스 또는 특정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통신사업자의 휴대폰 보호 서비스 무단가입 사건과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⁷⁾

③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 위반 계약체결

법령 및 해당 사업자의 약관상 의무인 이용계약서 미교부, 실제 이용자와 서류상 명의자의 대조절차를 규정한 약관에 반하여 사자 명의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시킨 통신사업자의 행위가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한 바 있다.⁸⁾

④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거부·지연·제한

이용계약의 체결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해지 또는 거부 역시 자유로워야 함에도 이를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상품에 대한 해지업무를 자회사 또는

6) 방송통신위원회(2015. 5. 13.), “방통위, 외국인 및 법인 이동전화 선불폰 명의도용 등 134만건의 위법행위 제재”, 보도자료.

7) 방송통신위원회 제2010-34-145호.

8) 방송통신위원회 제2009-47-181호.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과도한 해지방어 목표 설정과 성과급 차별로 해지방어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한 바 있다.

⑤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 제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4-5〉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 제한 행위에 대한 심의 사례

구분	내용
접속경로 임의 변경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특정 ISP 이용자의 품질저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행위로 보아 제재처분을 하였으나,⁹⁾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는 ‘이용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취소판결이 내려졌으며,¹⁰⁾ 대법원에서는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회사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5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¹¹⁾
이동통신 개통지연	방통위는 2021년 4월 KT가 본사의 영업전략, 대리점의 판매수익 차원에서 신규 출시된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에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일부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일에서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하였음¹²⁾
초고속 인터넷 속도저하	방통위는 2021년 7월 KT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개통관리시스템상 설정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속도 저하가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하였음¹³⁾

9)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13-099호

10)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7017 판결

1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12) 방송통신위원회 제2021-13-044호

13) 방송통신위원회(2021. 7. 21.),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보도자료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통신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료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점, 유료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와의 약관 체결을 통한 계약 관계가 전제되므로 해당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로 포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기 유형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으로 관련 행위를 규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를 상대로 임의로 이용계약을 체결되도록 하거나 무료 구독 서비스로 이용자를 유인한 후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행위 등을 하여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이용자 가입의사 미확인 계약 체결’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 의사 확인 없이 관련 인공지능 서비스의 부가적 기능, 확장 기능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부가서비스 또는 특정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경우 이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 의사 미확인 계약체결’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관련 법령 또는 이용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이용계약서 교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 위반 계약체결’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인공지능 서비스 상품에 대한 해지업무를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과도한 해지방어 목표를 설정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 상품에 대한 해지 절차 자체를 까다롭게 설정하여 이용자의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거부·지연·제한’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트래픽 처리 과부하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제공·처리 속도 등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켜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제한’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3)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4] 제5호 사목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 방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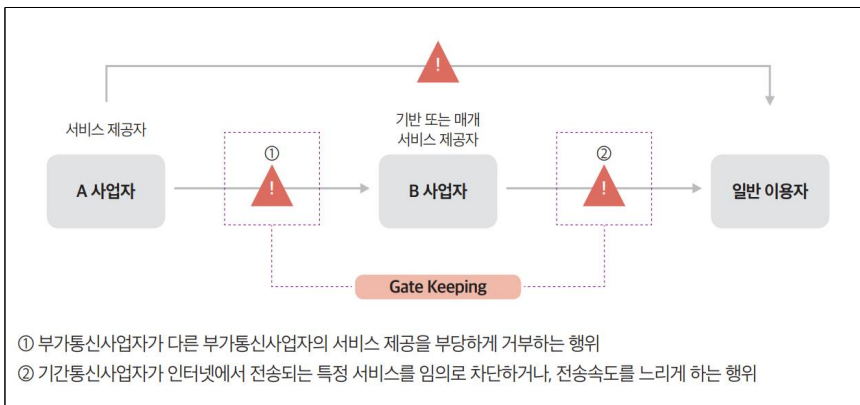
①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설비 운용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설비 운용 관련하여, IDC사업과 전용회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KT가 자사 IDC와 타 사업자 IDC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차별적인 이용조건을 제시하고 전용회선 제공을 지연 및 거부한 행위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전기통신역무의 선택을 제한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¹⁴⁾

②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당 부과

기반 또는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부당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 부기준’에서 구체화한다.

[그림 4-1]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 구조도



14) 방송통신위원회 제2010-17-074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포섭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 타 사업자의 서비스와의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당하게 차단하는 등 타 부가통신사업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혹은 기타 부가통신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도달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에 따라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2.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제50조)

가. 개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는 이용요금, 약정 조건 등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당초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되었으나,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금지행위 조항으로 신설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정보만 안내하고 요금 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특정 상품을 무료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결합상품의 총액과 개별 상품의 가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이다.

〈표 4-6〉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677호)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후략)

나.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중요한 사항’이란, ‘일반적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용자의 계약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정 사항이 개별 사안에서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이라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도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의

〈표 4-7〉 규정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판단 사례

구분	내용
이용자 오인 유발	① 자사 소개 시 알뜰폰 브랜드명(‘SK알뜰폰 7모바일’)만 밝히거나 ‘SK’,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사업부’라고만 안내하여 이용자가 SK텔레콤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② ‘기기값이 100% 무료’ 또는 ‘나라에서 100% 단말기 대금을 지원’한다고 홍보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¹⁵⁾
이용요금 고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함으로써 이용 요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통상적인 철회가능 기간과 달리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¹⁶⁾
개통 시 속도 고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하여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에 대해 ‘개통 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며,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되었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¹⁷⁾
경품, 위약금 고지	KT가 할인형 약정갱신 방식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할인액의 경품 산정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의 위약금 부과 사실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경품, 위약금 등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서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한 바 있음 ¹⁸⁾

15) 방송통신위원회(2015. 8. 21.), “방통위, 알뜰폰 불법 텔레마케팅 강력 제재”, 보도자료

16)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04-005호

17) 방송통신위원회(2021. 7. 21.),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보도자료

18) 방송통신위원회 제2021-59-233호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시한다.¹⁹⁾

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가능성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술의 발전과 각종 서비스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투명성 확보 의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중요사항으로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영향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 ‘특정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 ‘특정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고영향 AI 개발 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수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위험관리방안’, ‘학습용데이터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내용 확인을 위한 문서’ 등 또한 이용자 고지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겠으나, 「인공지능기본법」은 이용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중요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용자 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경우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도 문제 될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경우, 이는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사업자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 유형으로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가 있으며, 기술정보에는 제품·시설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연구개발 정보 등이 해당된다.

1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월청구 요금 상제사항, 중도 해지 시 환급 가능한 요금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독과 관련한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 모델 상제 사항’, ‘시간당 처리 가능한 메시지 수(인공지능 서비스 유료 요금제가 등급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등급별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한 상제 사항’, ‘각 등급별 인공지능 시스템 처리 속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제32조, 제33조)

가. 개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업무·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율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제32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로서 불만이나 민원처리의 신속처리 의무를 규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을 둔 것은 ① 전기통신사업이 전문적·기술적이어서 이용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②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사업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가 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업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이용자 고지의무는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신장애 발생 시 역무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때 통신장애로 인해 전화는 물론 유·무선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카드결제·예약·주문배달·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피해를 경험한 후, 이용자 손해배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표 4-8〉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업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나.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하며, 처리 의무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처리 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무과실책임이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고객 대응 지연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²⁰⁾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08426 판결 참고

〈표 4-9〉 행위와 피해자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판결 사례

구분	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08426 판결	2018년 KT의 통신장애로 인하여 119 신고가 7분 지연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구급대원들이 실제 도착한 때보다 7분 일찍 도착하였더라도 망인이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084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6. 2. 17. 선고 2015나 39769 판결	법원 또한 통신장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그 특별손해까지도 약관상 손해배상예정액에 포함되고, 설사 원고들의 손해가 위 예정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유·무료 서비스의 구분은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와는 무관하며,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인정된다면 그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 유료서비스의 이용자는 ① 소비자가 이용하는 유료서비스의 측면과 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유료서비스의 측면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①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상당액이, ② 사업자의 경우 이용요금 상당액 외에도 접속장애가 지속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 상당액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무상계약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배제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자 측의 과실 및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무료서비스 이용자들이 상정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으로는 ① 장애로 인한 불편(그에 따른 위자료), ② 서비스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르는 손해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특별손해 및 위자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바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또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

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①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② 손해배상의 기준, ③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표 4－10〉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 의무

구분	내용
(중단사실 고지의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 서비스 중단 사실 및 그 원인 • 대응조치 현황 •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손해배상 고지의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손해배상의 기준 •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은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장애’는 ‘전송속도 저하 등 서비스 안정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말하며, ‘중단’의 문언상 의미와 기존 서비스 중단이 문제되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서비스 자체에 접속할 수 없거나 이용 자체가 불가능 수준에 이르러야 ‘중단’에 해당하며, 그 외에 접속이 지연되거나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단사실 고지의무 또는 손해배상 고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법령상 의무 부과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고지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면제 사유

사유	중단사실 고지	손해배상 고지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면제	면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요구	면제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2시간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등 위 가 및 나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면제	면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면제	요구

중단사실 고지의무 및 손해배상 고지의무의 이행을 위한 고지방법으로는 전자우편 이용, 문자메시지 이용,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자고지 방법 이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지를 할 수 있다.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3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가능성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자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인정된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무료 서비스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료서비스 이용자는 ① 소비자가 이용하는 유료서비스와 ②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유료서비스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상당액이, ② 사업자의 경우 이용요금 상당액 외에도 접속장애가 지속된 기간의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 상당액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상계약(무료서비스)의 경우라도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배제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자 측의 과실 및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무료서비스 이용자들이 상정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으로는 ① 장애로 인한 불편(그에 따른 위자료), ② 서비스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르는 손해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및 특별손해 및 위자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4.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기준 제안(제32조, 시행령 제37조의2)

가. 개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2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불만처리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32조 제1항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사업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는 실정이었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수준 및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자발적 이용자 보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

〈표 4-1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시행령 제37조의2

구분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별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2.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3.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4.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1)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서 ①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별 이용자 규모, ②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③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에 따라 선정된다. 2013년 첫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11개사로부터 시작하였고,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신설된 이후 계속 확대되어 2020년에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포털, 앱마켓 등 28개사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21개사와 온라인 관계망(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개사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와 관련하여 새롭게 추가되는 분야 또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년간의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년간 시범 평가를 진행한 뒤 본 평가로 전환하고 있다.

2) 평가기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세부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의2 제2항에 따라 ①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②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③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④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⑤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인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서비스별로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3) 평가방법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인센티브 부여

자율규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평가제도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4항,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6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추가적 감경 사유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매우우수 등급을 받으면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되는 등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다.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가능성 및 법령 개선 방향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

에는 최근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평가지표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행정처분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했으며, 부정가입 및 명의도용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① 거래대금 신속 정산 및 정보제공 ② 악성후기·반복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노력 등의 지표를 신설해 쇼핑·배달 등 사업자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추후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는 경우 평가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중 상당수의 사업자가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기준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지, ②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③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는지이다. 이때 중복 규제 혹은 이중 규제의 위험성은 없는지도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사업자의 법적 준수 의무 여부와는 별개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 역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기준으로 포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인공지능시스템의 생명 주기별(기획-개발-이용)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지, ②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입력 및 출력에 대한 필터링 절차를 두고 있는지, ③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타인의 권리 침해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차단 등의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④ 이용자가 부적절한 결과물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고 시 그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지, ⑤ 이용자의 입력데이터가 학습 등으로 이용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거나 이용자에게 학습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지이다.

제5장 정보통신망법

이번 장에서는 법령안내서 연구반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보통신망법」 관련 주요 검토 결과를 다룬다. 이를 통해 최종 법령안내서로 재구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어떠한 법적 해석과 쟁점이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최종 안내서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절 「정보통신망법」 개관

1.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보통신망법」 제1조).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은 ①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③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²¹⁾, 이에 따라 제2장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한 규정들을, 제4장과 제5장에 각각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제6장에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각 장의 입법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조항을 해석할 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각 장은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해당 장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²²⁾

21) 이창범·황창근·정필운(2021).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

22) 「정보통신망법」의 각 장별 주제는 다음과 같음(제3장은 2015. 6. 22. 삭제됨)

- － 제1장: 총칙
- －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 －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정보통신망법」은 연혁적으로 1986년 5월 12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3848호)」로 처음 제정되었다. 당시의 법률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²³⁾

이후 「정보통신망법」은 2001년 1월 16일 2차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의 명칭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360호)」로 변경되었다. 이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울러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내용선택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는 기존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²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청소년 보호 관리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1조 및 제42조의3),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임시조치 관련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 내지 제44조의3),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을 비롯한 이용자 권리보호 관련 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의 활용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24년 법률 제20534호에 따른 일부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 유포·확산 방지 규정(법 제49조의2)이 신설되었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통신망법」에 또 한 차례의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알리는 사전 고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불법정보의 유통 및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알고리즘 불공정성 대응 등, 인공지능 도입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여러 문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

23) 국회(1985),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제12대 국회 의안번호 120162.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835호, 1999. 2. 8.,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 일부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과의 관계 역시 「정보통신망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보인다.

2. 수범자 및 수범행위 범위

가. 적용범위 일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범위는 물적 측면과 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물적 적용범위는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가 해당하며, 이는 각각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의되어 있다. 둘째, 인적 적용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역시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를 둔다. 다만 일부 규정—예컨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2호). 즉,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역무 그 자체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중개하는 서비스 전반에 적용된다. 다만 정보제공서비스 및 정보제공매개서비스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인적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또한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동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정보통신망에서 영리 목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형태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이용자 역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정보제공 서비스와 정보제공 매개 서비스를 의미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정보제공자)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제공매개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공자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와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공 또는 매개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

〈표 5-1〉 영리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03 판결 등 참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자료: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 상 ‘인공지능사업자’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7호). 이러한 인공지능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을 API 형태로 제공하여 인공지능이용사업자나 최종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②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개발사업자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을 내장한 독립형 기기라도 장치 내부에서만 인공지능 연산이 이루어지고 외부 통신과의 송수신 없이 작동하는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내의 인공지능 이미지 편집 앱 서비스나 오프라인 모드의 가정용 청소로봇 등을 떠올려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나 기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과물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면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안내서에서 규정하는 '유통'의 개념과 관련 법령인 제44조의7의 법령 해설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다. 이용자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개념은 「인공지능기본법」의 이용자 개념과도 연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기본법」상 '이용자'란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받

는 자를 의미한다(「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8호). 이때 「인공지능기본법」상 이용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인공지능기본법」상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에도 해당한다. 한편,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7호 나목), 이 경우 해당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상으로 이용자인 동시에, 자신의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도 간주될 수 있다.

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개념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전송, 게시, 배포, 공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율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한 유통은 크게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한 정보를 별도의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게시, 배포, 공유하는 경우와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상호 간에 정보(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한 정보를 포함)를 전송, 게시, 배포, 공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한 정보를 웹사이트, 소셜미디어네트워크 등의 외부 정보통신망에 업로드하는 경우나,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용자와의 대화 기록을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자에게 대한 이러한 정보 전송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의 유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정보의 유통보다 생성의 기능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생성된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별도로 게시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이용자에게 대한 정보 전송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의 유통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정보통신망법」은 국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 시장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된다(「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 즉,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자라도 해외에서 영리 목적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참고로 「인공지능기본법」

역시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인공지능기본법」 제4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과 동일한 수준의 역외적용 범위를 갖는다.

한편,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국내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명시적으로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① 한국어로 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② 한국인을 이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③ 국내에서 관련 사업 신고 등을 하였는지 등이 있으며,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²⁵⁾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가 국내 시장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바. 「정보통신망법」과 「인공지능기본법」과의 관계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산업 및 인공지능 사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인공지능기본법」 제5조 제1항),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인공지능기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인공지능기본법」 제5조 제2항).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5조).

여기서 법률 간에 우선 적용 관계(특별법 우선의 원칙)가 문제되는 경우, 동등한 법률 형식 간이라도 특정한 사안 또는 대상, 지역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률이 특별법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어떤 법률이 특별법인지 여부는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인공지능기본법」 제1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25) 방송통신위원회(2019. 3.),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보통신망법」 제1조). 각 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대한 일반법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공되는 콘텐츠가 「정보통신망법」상 위법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불법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규율은 「정보통신망법」이 「인공지능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에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비해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제2 절 「정보통신망법」의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지침

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제44조)

가. 개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권고사항,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아니되며(제44조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4조 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44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나 각종 명예훼손성 정보의 확산 등의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표 5-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 | | |
|---|--|
| ① |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 ②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③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

나.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정보를 유통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과도한 법적 불확실성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동 조항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하여, 다음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판결)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의미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 규율하는 권리보호의 범위를 ‘타인의 모든 권리’를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판례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범위를 ① 인격권 침해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② 재산권 등 인격권 이외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타인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해석은 규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수범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의 기준과 수준 또한 모호해져, 결국 과도한 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문 문언에 따라 인격권 침해(예: 사생활, 명예 등)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표 5-3〉 ‘권리 침해 정보’의 범위 제한

[사실관계]

사업자는 오픈마켓에서 자신의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가 횡행하자,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에 관한 정보를 찾아서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위조상품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러한 요청에 불응하자 사업자가 해당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나 각종 명예훼손성 정보의 유통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등”이라는 표현은 그 앞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단어와 유사한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바, 그럼에도 위 규정 중 “등 타인의 권리”라는 문언에 집착하여 이를 제한

없이 '타인의 모든 권리'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과연 위 조문이 의미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불명확하게 되고, 그 결과 이렇듯 불명확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또한 모호하게 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위 법 제44조 제1항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을 의미할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료: 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판결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유통된 정보의 내용 등에 따라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 또는 별도의 개별법에 따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경우(제44조 제1항), 유통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형법」 제313조 위반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5-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침해정보의 유통 방지 노력 외에는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방조자’로서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왔다. 특히 불법정보(예: 명예훼손 게시물, 음란물 등)가 플랫폼 또는 웹사이트에 게시·배포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표 5-5〉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요건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성립한다.

자료: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한 다. ①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공간에 게시되어 있고,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의 존재 및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피해자가 삭제·차단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나 직접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게시된 경위나 반응 등으로 인해 해당 정보의 존재를 외관상 명백히 인식 가능한 경우 등)하고 있었으며, ③ 기술적, 경제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함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또는 차단 등 조치를 장기간 취하지 않아 불법정보의 유통을 용이하게 방치한 경우이다.

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가능성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로 기존과 다른 형태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여

마치 해당 인물이 실제로 특정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텍스트 생성 도구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유포할 수 있다. 특히 딥페이크 생성 기술을 악용해 생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비동의의 성적 이미지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²⁶⁾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생성이 보다 쉬운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콘텐츠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려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생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거나 필터링 단계를 두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얼굴 이미지를 활용해 모욕적이거나 허위의 콘텐츠를 생성하려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출력 전 모니터링·필터링 절차를 마련하거나 이용자 신고 체계 운영 등의 보호 장치를 갖추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도 알고리즘 설계 및 모델 학습 단계에서부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안전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이슈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면, 단순히 허위 이미지 또는 영상물의 생성 그 자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성된 콘텐츠 내부의 허위 사실이나 묘사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 12.),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표 5-6〉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의한 명예훼손 쟁점 사례

구분	사례1	사례2
일시	2023년 3월 21일	2025년 3월
내용	영국의 온라인 탐사매체 벨링캣(Bellingcat) 설립자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을 묘사한 이미지를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 게시	노르웨이의 한 남성이 생성형 AI에 자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해당 AI가 “아들 둘을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허위 정보를 응답
배경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각자료(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여 게시	—
결과	약 692만 회 이상 조회되며 빠르게 확산, 다수 이용자가 실제 체포 장면으로 오인함 ※ 실제로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사실을 생성 및 유통한 사례	당사자는 AI 서비스 제공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 사례는 AI가 생성한 허위 사실로 인해 개인 명예가 침해된 대표 사례로 주목됨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자체는 이용자가 생성한 허위 콘텐츠의 유통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례1]과 같은 경우 다음의 책임 성립이 가능하다. 즉, 피해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여 직접정범으로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표 5-7〉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자체에는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지만, 다른 연계 법령 조항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연계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8〉 딥페이크 불법정보 사례와 제44조 연계 법령

구분	사례1: 딥페이크 포르노 생성·유포 행위	사례2: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허위사실 공표
내용	이용자가 인공지능 및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 여성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얼굴을 삽입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생성하여 유포한 경우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해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유포한 경우
연계 법령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반포 등을 할 목적’ 혹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음	해당 이용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아울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한 별도로 부담할 수 있음

자료: 김재운(2024).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의 책임귀속 주체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기도 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2월 발표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실무적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표 5-9〉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의 인격권 보호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 인격권 보호

- 가. 개발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이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나.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용자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인지하고, 내부 모니터링 체계나 이용자 신고 프로세스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다.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산출물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와 방법을 고려한다.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불법정보 게시 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지 않을 의무로서, 기술적으로 불법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통제할 책임이 부여된다.²⁷⁾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5-10〉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의 생성 콘텐츠 관련 기준

5. 생성 콘텐츠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 가.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각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하고 이용 단계에서 이용자가 자기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안내한다.
- 나.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거나 다른 방식의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6. 생성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 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 나.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값과 생성된 산출물이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관리한다.
-

27)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2. 정보의 삭제요청 등(제44조의2)²⁸⁾

가. 개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 및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2007년에 도입된 규정이다. 종래에는 삭제 조치의 요건으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가 실제로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해가 확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였다.²⁹⁾ 이에 임시조치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을 때,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조치를 시행한 경우, 이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임시조치제도에 대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전원재판부).³⁰⁾

〈표 5-1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28) 제44조의2 제3항은 임시조치 제도와 다른 성격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삭제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논의에서 제외함

29) 황창근(2009).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30)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나.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정보게제자”라 함)도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이어야 하며, 따라서 텔레그램의 비밀대화방처럼 특정인만 접근 가능한 폐쇄형 채널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가 제44조의2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³¹⁾

해당 정보는 제44조와 마찬가지로 “사생활, 명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인의 “침해사실 소명 및 당해 정보의 삭제등 요청”이 있어야 한다. 따라

31) 류부곤(2024).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서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등과 무관하게 정부의 정책 또는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을 비판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³²⁾ “삭제등 요청”이란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에 관한 요청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반박내용의 게재만 요청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다 강력한 조치인 임시조치까지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제44조의2에서 의미하는 이용자의 “삭제등 요청”은 실질적으로 ‘삭제요청’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률상 ‘소명’이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증명을 할 필요 없이 확실하다고 추측 가능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신청인(권리침해 주장자)이 증거를 제출해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권리침해 판단은 대부분 해당 정보의 내용에 좌우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제44조의2에서 신청자의 소명이라는 요건을 두는 것은 곧 권리주체가 신청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기타 권리의 침해’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 누가 권리주체인지, 해당 정보가 어떻게 권리를 침해했는지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납득 가능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때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의 내용과 주체, 해당 정보와 권리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어느 정도 납득시켜야 한다.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제44조의2 제2항),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은 해당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용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았으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이하 “임시조치”라 함, 제44조의2 제4항).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임시조치 후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재게시청구’를 하였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법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재게시 청구 또는 임시조치 이후의 처리 절차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삭제 등을 요청한 신청자, 그

32)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정보게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실무에서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 중단 처리한다.³³⁾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 이러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가능성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이용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판단한 뒤,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³⁴⁾

한편,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생성하였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형 플랫폼(예. 디지털 플랫폼, 웹사이트, SNS 등)을 통해 유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또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25. 2)과 같은 자율규제 지침에서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

33) 네이버, 다음 등의 임시조치 절차도 참조

34) 김재윤(2024).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의 책임귀속 주체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거나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라. 법령 개선 방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조치 요건으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공개성 대화방(예: 텔레그램의 비밀대화방 등)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일반’이라는 개념이 법령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통상 ‘일반’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일반에게 공개된’이라는 표현을 ‘2인 이상의 타인에게 제공된 정보’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콘텐츠의 공개 범위보다는 콘텐츠 자체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예컨대 사적 관계 내 공유의 형태라 하더라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라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와 부합한다.

다음으로 음란성 딥페이크 게시물의 경우,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 사실 자체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권 훼손이 중대한 바, 게시 공간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법령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신속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비공개 유통망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로 기능할 수 있다.

3. 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

가. 개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피해자의 소명과 삭제 등 요청을 전제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규율한 것과는 달리, 본 조는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권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특히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스스로 삭제요청을 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다만,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치 남용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사후 이의제기 절차나 투명한 운영 지침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나.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즉, 본 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경우, 제44조의2와 달리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임시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다음의 절차적 요건을 따라야 한다. ①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임시조치 사실을 정보게재자 등에게 통지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공시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② 제44조의2 제4항 후단: 임시조치의 유효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③ 제44조의2 제5항: 임시조치의 기준과 절차는 사전에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임의로 취해지는 조치라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가능성과 개선 방향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을 근거로 해당 정보에 대한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의 임시조치를 수행할 때 그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에게 불안정성과 사적 검열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의 기준, 절차, 통지 방식 등을 약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치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로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 생성형 기술 기반 콘텐츠가 점차 정교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제

공자가 이용자 본인보다 먼저 해당 콘텐츠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조항의 실효성과 적용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4.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제44조의7)

가. 개요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제44조)와 별도로, 제44조의7에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 자체를 규제(content regulation)함으로써 이용 환경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사후 심의 제도의 일환으로 이해된다.³⁵⁾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표 5-1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35) 이창범·황창근·정필운(2021).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

-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패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나.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지 혹은 단순 이용자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즉 불법정보를 전송·게시·공유하

는 모든 주체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유통”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전송, 게시, 배포, 공유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타 법령상의 유통 개념에 비해 포괄적인 내용을 유통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5－13〉 타 법령상 “유통” 개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 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조항(제44조의7 제1항)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을 열거한다. 이러한 불법정보에는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된다.

〈표 5－14〉 기타 불법정보의 유형

유형	설명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서 내용 자체에 의해 그 범죄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나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

자료: 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08헌마500 전원합의체 결정

이때 범죄는 법정형의 경중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³⁶⁾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6) 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08헌마500 전원합의체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외에도 불건전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가진다.³⁷⁾ 불건전정보 시정요구제도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법정보 규제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배포’는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가 개별적으로 특정인에게 유포된 경우라도, 이후 해당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재차 배포·판매·임대·전시 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행위도 배포로 간주될 수 있다.³⁸⁾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것은 해당 정보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예를 들어, 음란정보가 게재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또는 북마크를 제공하는 행위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제1호). ① 음란정보가 있는 외부 웹페이지를 링크 방식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고, ②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링크를 통해 음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³⁹⁾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정보로 간주된다(제2호).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② 공표 대상의 범위, ③ 표현 방식, ④ 표현으로 인해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⁴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제3호), 해당 규정에 따른 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전체 행위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① 일시·장소의 근접성, ② 행위 방법의 유사성, ③ 동일한 기

3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 내지 제8조의2.

38) 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10노75 판결

39)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40)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회나 범의의 계속성 등 일회성 혹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⁴¹⁾

실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⁴²⁾

①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식, ② 함축된 의미, ③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④ 문언 전송의 경위 및 횟수, ⑤ 수신자의 당시 상황 및 심리 상태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제4호). 유사한 규정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 있으며, 동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제48조 제2항 위반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상대방의 연령 확인이나 표시 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제5호). 정부는 2024년 불법촬영물을 직접 유통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영상이 게시된 오픈 채널의 접속 링크 또는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 역시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촬영물 유통(「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⁴³⁾

법령에 따라 금지된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역시 불법정보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며(제6호), 유통금지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등이 포함된다. ①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제6호의2), ②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

4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710 판결

4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43) 관계부처 합동(2024. 11.).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함)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제6호의3)이다.

그밖에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제7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제8호),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제9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모두 불법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특정인의 얼굴·음성·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나, 그러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모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한다.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 제2호)와 같이, 정보의 내용이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것이면 위 범죄 관련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①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②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③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④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표 5-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시정요구

-
- ① 삭제 또는 접속차단: 정보통신서비스 내지 게시판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더 이상 해당 불법정보에 접속할 수 없게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예컨대, 해외에 서버를 둔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접속차단)
 - ②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가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내지 게시판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향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이용약관 등에 불법정보 유통 시 회원자격 정지, 상실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③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본 법 및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표시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
-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해당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거나(시행령 제8조 제3항),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8조 제5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8조 제4항). 단, 이 조치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법정보의 유형에 한정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을 통해 이를 다룰 수 있다.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로 설계되어 있어 그 결정(시정요구)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기관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피고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정보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지닌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0누9428 판결(확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부터 제6호, 제6호의2부터 4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단, 불법정보가 제2호(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없다.

제44조의7 제1항 제7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불법정보(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교사·방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불법촬영물 등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 ②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제44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이 필요한 경우, ②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해당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당 이용자가 의견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별도의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누구든지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②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명예훼손·음란물 등의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 기반의 플랫폼 또는 웹사이트에 게시·배포된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방조 책임을 인정한다. ① 유통되는 정보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구체적·개별적인 정보의 삭제·차단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정보의 유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외관상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고,⁴⁴⁾ ③ 기술적·경제적으로 그에 대해 관리·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일정한 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불법정보의 유통을 용이하게 한 경우이다.⁴⁵⁾

〈표 5-16〉 방조 책임에 대한 판결 I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인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 사이에 음란한 영상의 배포 등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게시된 파일이 음란한 영상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었고, 게시된 음란한 영상 파일을 약관에 따라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권한과 음란한 영상 파일을 게시한 회원에 대한 이용정지 및 강제탈퇴 권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배포 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검색을 하고 검색된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한번씩 낱을 잡아서 음란한 영상 파일을 일부 삭제하였을 뿐 그에게 기술적·경제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전혀 취함이 없이 회원들의 음란한 영상 배포 등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자료: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도7973 판결

이때, 불법정보 유통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나아가 그 행위를 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⁴⁶⁾

44)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45)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도7973 판결

46)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표 5-17〉 방조 책임에 대한 판결 II

한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자료: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

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가능성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전송·공유되거나, 플랫폼 내에서 게시·저장·전달하는 구조를 갖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망법」의 수범자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의 ‘유통’에 해당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한 유통의 유형은 크게 ① 해당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한 정보를 별도의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게시, 배포, 공유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상호 간에 정보(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한 정보를 포함)를 전송, 게시, 배포, 공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불법정보가 유통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 내에서 해당 불법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한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콘텐츠 ‘유통’이 아니라 ‘생성’에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 행위로 직접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비스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유통’에 해당되기 어렵다. 생성된 정보가 서비스 외부로 실제로 유통되지 않는 한, 유통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유통’ 행위로

보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 생성한 콘텐츠 혹은 인공지능 챗봇을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문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음란물이나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정보가 유통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Ofcom은 유통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것만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조건을 붙였다. 즉, 불법 콘텐츠를 생성만 한 경우 책임이 경감되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언급한다.

〈표 5-18〉 영국 Ofcom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상 서한」(2024. 11.)

영국 Ofcom은 2024년 '생성형 AI 및 챗봇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대상 서한(2024. 11)'을 공표하여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상 어떤 조건에서 법적 책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함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단순한 콘텐츠 생성 기능에 그치지 않고, 생성된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전송·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생성만' 한 경우에는 책임 부과 정도가 낮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또한, 해당 서비스가 불법 콘텐츠 생성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한 경우, 생성 과정에 이용자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바로 귀속시키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구조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 방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구조적 위험이란, 특정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특정 유형의 불법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설계·운영 구조를 말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정 수준으로 성숙한 만큼,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적인 수준에서 사전 예방조치 이행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 관련하여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불법 또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생성 과정에서 이를 모니터링·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5－19〉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의 콘텐츠 규율

① 인공지능의 산출물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
②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을 제시
③ 유해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입력 프롬프트 및 산출물을 필터링하고 노출이 심한 사진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내
④ 이용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프롬프트에 입력할 때 경고 문구를 제시
⑤ 모니터링 및 필터링을 거치는 등 불법·유해 콘텐츠의 생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

다. 법령 개선 방향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의 ‘유통’을 전제로 한 규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이 정보 ‘생성’ 기능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적용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불법정보의 생성·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 귀속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정보의 ‘생성’과 ‘유통’ 구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내에 생성된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전송·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여지를 두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영국 Ofcom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상 서한」(2024. 11. 8.)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1항 ‘제4호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이용자 보호’ 조항을 추가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의 불법 또는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적 의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가 생성되어 빠른 속도로 유통될 때의 그 파급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과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국내에 영향력이 큰 주요 해외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고, 이들이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콘텐츠를 생성한 이용자와 이를 매개한 유통 플랫폼의 책임을 함께 고려하여, 그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책임 분담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5.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제44조의8)

가. 개요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는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그 보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방향이 논의된다. 이에 따라 2018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이 신설되었으며, 이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⁴⁷⁾

〈표 5-20〉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란 문자 또는 음성을 활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 정의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포함되며,⁴⁸⁾ 구체적으로는 챗봇(chatbot) 서비스, 가정용

47) 국회(20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014186호.

48) 국회(20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014186호.

인공지능 스피커, 애플의 시리(Siri), 삼성의 빅스비(Bixby)와 같은 음성 기반 인공지능 비서, 그리고 최근의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에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와 동법 제44조의4의 ‘청소년유해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된 정보를 의미한다. ‘청소년유해정보’는 동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모든 정보를 포괄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관련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또는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

〈표 5-21〉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의 청소년유해매체물

-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제1호)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제2호)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제3호)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4호)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제5호)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제6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2]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 5-2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가.목)
 -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나.목)
 -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다.목)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라.목)
 -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마.목)
 -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바.목)
 -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사.목)
 -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아.목)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자.목)
 -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차.목)
 -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카.목)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타.목)
 -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파.목)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하.목)
-

본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의무 또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도록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가능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문자·음성을 이용한 대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14세 미만 아동도 문자 및 음성 기반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이용 빈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스냅챗(Snapchat)은 자사 인공지능 챗봇 'My AI'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 대상 부적절 콘텐츠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법무부에 회부된 바 있다.

〈표 5-23〉 Snap社 스냅챗(Snapchat)의 My AI 서비스 사건

2023년 3월 워싱턴 포스트(WP)는 스냅챗의 AI 챗봇 'My AI'가 사용자를 미성년자로 가장한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보도함.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을 15세로 설정하고 AI와 상호작용하자, 'My AI'는 음주 계획이나 대마초 흡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였음. 또한, 13세 사용자로 설정된 연구자에게는 'My AI'가 연상의 성인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조언한 것으로 확인됨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 중 상당수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이용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형태가 바로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이다. 따라서 동 조항의 취지와 규범적 함의는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 실질적인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자율적 조치를 통해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

〈표 5-24〉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위한 자율 조치 예시

-
- LLM 기반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학습 단계(pre-training)에서 차별적, 편향적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도록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범위를 관리
 -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시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하거나 아동전용 모드(아동보호모드)를 운영
 - AI 스피커 등 공용 하드웨어 기기 이용을 위해 연동하는 앱에 인증 과정에 연령 인증 절차 고려^{49/50)}
 - 이용약관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경로와 용어를 사용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⁵¹⁾
 - 혐오, 차별, 욕설, 음란한 단어, 마약 관련 은어 등과 관련된 금칙어가 프롬프트에 포함될 경우, 경고 문구 표시, 자동 차단, 블러 처리 등 조치⁵²⁾
 - 금칙어가 없더라도 인공지능 모델이 자체적으로 문장의 맥락과 의미를 분석하여 부적절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조치를 취하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 * 문맥상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자살이나 자해를 권유하는 등 특정 주제를 감지하면 이에 대해 경고 혹은 차단 조치. 문구·문장 외에도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에 대한 필터링도 함께 고려
 - AI·디지털 기술을 통한 필터링 시스템 외에 인간이 개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별도로 운영
 - * 예를 들어, 조직 내부에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필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리뷰⁵³⁾
 - 이용 과정에서 문제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에 간단한 절차로 제공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 및 조치 이행⁵⁴⁾
-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 제공 기업인 character.ai 사례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에서 아동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는 특히 성적·폭력적 콘텐츠의 제공 가능성, 아동의 몰입과 의존 유발, 감정적·행동적 위험 초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아동보호 조치 미흡 문제를 드러낸다. 따

49) 방송통신위원회(2024. 12.), 『청소년 보호 업무 안내서』.

50) 초록우산(2024), “디지털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연구보고 2024-4.

51)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5. 2.),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52) 방송통신위원회(2024. 12.), 『청소년 보호 업무 안내서』.

53) 방송통신위원회(2024. 12.), 『청소년 보호 업무 안내서』.

54)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5. 2.),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라서 사업자는 부적절한 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시스템, 이용 전 사전 경고 및 연령 인증, 보호자 동의 확보 절차, 신고·상담 센터 마련 등 다층적인 위험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5-25〉 AI챗봇 서비스의 아동 대상 부적절한 정보 제공 사례

2024년 character.ai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됨. character.ai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한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개인화된 챗봇과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첫 번째 소송은 2024년 10월 미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14세 아들이 character.ai 챗봇서비스 이용 이후 자살하였다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해당 아동이 character.ai의 캐릭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대화에 집착하게 되었고, 학교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챗봇과의 대화 직후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주장함.⁵⁵⁾ 또한 챗봇이 성적인 정보를 생성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 경고나 보호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⁵⁶⁾

두 번째 소송도 같은 해 12월 미국에서 제기되었는데, character.ai가 자신의 17세 아들에게 성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해와 폭력을 조장했다고 부모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 챗봇이 부모를 해치라고 유도하는 대화를 했고, 이후 해당 청소년은 자해를 시도해 응급실로 이송됨⁵⁷⁾

이후 character.ai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대화 탐지 기능 개선, 면책 조항에 이용자가 챗봇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내용 포함, 플랫폼 사용 1시간 경과 시 경고 알림 제공 등 다양한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하였으며, 18세 미만 이용자 대상일 때 AI 모델에 민감하거나 암시적인 콘텐츠 노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정을 하였다고 발표함

참고로 영국 Ofcom은 character.ai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온라인 안전법(2023)」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전술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상 서한」(2024.

55) Brendan Pierson(2024. 10. 23.), "Mother sues AI chatbot company Character.AI, Google over son's suicide", 《Reuters》,

<<https://www.reuters.com/legal/mother-sues-ai-chatbot-company-characterai-google-sued-over-sons-suicide-2024-10-23/>>.

56) 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n.d.), "Character.AI Lawsuits",

<<https://socialmediavictims.org/character-ai-lawsuits/>>.

57) Clare Duffy(2024. 12. 10.), "An autistic teen's parents say Character.AI said it was OK to kill them. They're suing to take down the app", 《CNN》,

<<https://edition.cnn.com/2024/12/10/tech/character-ai-second-youth-safety-lawsuit/index.html>>.

11. 8.)을 발표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제시한다.

〈표 5-26〉 생성형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영국 Ofcom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상 서한」)

-
- ‘사이트 또는 앱에 챗봇이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생성 AI 챗봇이 포함된 경우’ 이는 상 사용자 간 서비스(user-to-user services)에 해당 →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 및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음란물을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가 포함된 사이트와 앱’도 의 규제를 받음 →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불법 게시물 및 아동에게 유해한 자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는 아마존의 알렉사(Alexa), 애플의 시리(Siri) 등과 같이 음성 기반 대화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하며, 이 경우 가정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개별 이용자 식별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고, 그에 대한 사전 경고나 모니터링·필터링 등의 차단 조치나 이에 준하는 노력이 부재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할만한 사례로는 2021년에 10세 소녀가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에게 “챌린지(도전)”할 만한 일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행위(감전)를 추천하였고 곁에 있던 부모가 이를 제지한 사례가 있다(BBC News 코리아, 2021. 12. 29.).⁵⁸⁾

한편,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었더라도 해당 서비스가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가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키즈(Youtube Kids)와 같이 아동용 콘텐츠 플랫폼에서 자동 생성된 자막은 일방향 정보제공에 해당하며, 이용자와의 대화형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58) 《BBC News 코리아》(2021. 12. 29.). “아마존 인공지능, 10세 소녀에게 위험한 챌린지 조언 논란”.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807502>>.

6. 청소년유해정보(제41조)

가. 개요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1조가 도입⁵⁹⁾ 되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도모하고 청소년 유해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 42조의3이 도입⁶⁰⁾ 되었다.

〈표 5－27〉 「정보통신망법」의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 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정보통신망법(법률 제6360호)」 제정·개정이유 참조

60) 「정보통신망법(법률 제7262호)」 제정·개정이유 참조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6조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 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41조 제1항). 청소년 보호 시책을 추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64호)」 제2조 제5호).

청소년유해정보에는 음란·폭력 정보 이외에도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이 포함된다.⁶¹⁾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61) 법제처 2021. 8. 2.자 법령해석 안전번호 21-0379;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법령의 ‘등’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있다.⁶²⁾

청소년유해정보를 판단할 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표 5-28〉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2. 개별 심의 기준

-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이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추천하는 콘텐츠나 인공지능

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법원도 열거된 항목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62)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 보호업무 가이드라인』, 12면.

능 생성 챗봇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과몰입이 문제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중독성 콘텐츠가 청소년유해정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는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 인터넷중독·과몰입규제,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보호의 3가지 방향’으로 구분되며,⁶³⁾ 이에 「청소년 보호법」도 제2장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제3장에서 중독·과몰입에 관해 규제하고 있으나 인터넷 게임에 한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서도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형 중 하나로 중독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한다.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표 5-2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사업자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
|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 |
|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
-

위의 요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한다는 의미는 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1)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서비스 내에서 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의 수립, ②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③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④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⑤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

63) 황창근(2015), “청소년 보호와 인터넷규제”,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⁶⁴⁾ 청소년 보호계획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표 및 기본 원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장치, 청소년 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방법 및 대응 절차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조치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 또는 성인인증장치 적용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과 함께, 금칙어 설정·운영 및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조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교육에 관련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정보 유형,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 방침,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 기준, 청소년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당 및 고충처리 시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미숙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청소년 이용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을 권장한다.

2) 이용자 관련 권고사항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연령 확인 조치에 응하고 공개된 청소년 보호계획을 숙지하여, 서비스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사업자에게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서비스 내에서 수집한 청소년유해정보를 유통시키지 아니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건전한 통신윤리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3) 제재 규정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7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관련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3항 제22호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4)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 보호 업무 가이드라인』.

처분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물품·서류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 가능성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음란·폭력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표 5-30〉 Snap社 스냅챗(Snapchat)의 My 인공지능 서비스 사건

2023년 3월 워싱턴 포스트(WP)는 스냅챗의 AI 챗봇 'My AI'가 사용자를 미성년자로 가장한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보도함.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을 15세로 설정하고 AI와 상호작용하자, 'My AI'는 음주 계획이나 대마초 흡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였음. 또한, 13세 사용자로 설정된 연구자에게는 'My AI'가 연상의 성인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조언한 것으로 확인됨

자료: Geoffrey A. Fowler(2023. 3. 14.), "Snapchat tried to make a safe AI. It chats with me about booze and sex",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3/03/14/snapchat-myai/>〉.

라. 법령 개선 방향

인공지능에 기반한 SNS가 과의존을 유발하는 등 청소년의 인지 및 정서 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 취향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중독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비자발적·습관적 이용을 유도한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O)은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2배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⁶⁵⁾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청

65) 《한국일보》(2023. 5. 24.). "미국 공중보건당국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치명적 위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415330003722>〉.

소년(만 10~19세)이 46.7%로 다른 세대(성인 33.9%, 유아동 28.2%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⁶⁶⁾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이 데이터 분석, 패턴 예측 등을 통해 인간의 인지적 역할을 대신 수행함에 따라 이용자의 자율성이 저하되는 과의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간의 인내심과 독립적 사고 능력을 저해할 위험도 내포한다.⁶⁷⁾

덧붙여 인공지능 과의존 문제 완화를 위한 핵심 선결 과제로 이용자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디지털포용법」 및 「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디지털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지원 정책 또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도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인 리터러시 제고 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기발의된 법안 내용을 참조⁶⁸⁾하여 재구성한 중독성 콘텐츠 제한 규정 도입 방안을 구성해 본 결과이다.

〈표 5-31〉 「정보통신망법」의 중독성 콘텐츠 제한 규정 도입 방안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⁶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중독성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회관계망 서비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이하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라 한다)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12.),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67) Ahmad, S.F., Han, H., Alam, M.M. et al.(2023),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human loss in decision making, laziness and safety in education”, Humanit Soc Sci Commun 10, 311, p. 4.

68)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816호),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761호),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630호),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798호) 참조

69)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816호),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761호),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630호),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798호) 참조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중독성 콘텐츠·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4(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등)	①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중독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이하 “중독성콘텐츠제공자”라 한다)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중독성콘텐츠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독성 콘텐츠가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특정 시간에 알람을 제한하는 등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과몰입 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42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과몰입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해당 법령 개선 제안과 관련하여, 청소년 과몰입 등 유해한 현상 방지는 ‘전면 금지(청소년의 SNS 이용 전면 금지)’ 방식이 아닌 ‘위험 행위 규제(중독성 콘텐츠 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방식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전면 금지의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 이슈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관련 해외 사례를 참고하였다. 참고한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SNS 플랫폼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2202761호),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630호),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798호) 참조

〈표 5-32〉 특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SNS 플랫폼 사용 제한 법안의 해외 사례

지역(일시)	법안	내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2024. 9. 20.)	「Protecting Our Kids from Social Media Addiction Act(SB-976)」 발효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플랫폼’이 사전에 부모의 확인 가능한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호주 (2024. 12. 11.)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개정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이 금지

즉, 청소년 과몰입 예방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SNS 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알권리 등의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청소년의 헌법상 권리 및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가 덜 침해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입법 시에는 사전에 중독성 콘텐츠의 위험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독성 콘텐츠’의 정의와 수범자인 ‘중독성 콘텐츠 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은 중독성 콘텐츠 자율규제 방안 구성(안)이다.

〈표 5-33〉 「정보통신망법」의 중독성 콘텐츠 자율규제 방안(안)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중독성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회관계망 서비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 (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 (자율규제)	3. 중독성 콘텐츠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4조의 시책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005년 당시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의 SNS 플랫폼 사용을 제한하는 해외 입법례에 대하여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안(Protecting Our Kids from Social Media Addiction Act, SB-976)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유타주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⁷⁰⁾ 텍사스주, 아칸소주, 오하이오주에서도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이유로 법안 제정 또는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대해서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VPN 접속 우회 등이 가능하므로 실효적이지도 않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⁷¹⁾

70) Kyle Dunphey(2024. 9. 11.), “Judge blocks Utah’s social media laws, writing they likely violate the First Amendment”, 《Utah News Dispatch》,
<<https://utahnewsdispatch.com/2024/09/11/judge-blocks-utah-social-media-law/>>.

71) Alasdair Pal & Cordelia Hsu(2024. 11. 29.), “Australia’s under-16 social media ban sparks anger and relief”,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australian-pm-albanese-says-social-media-firms-now-have-responsibility-protect-2024-11-28/>>.

7.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제22조의2)

가. 개요

본 조항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혹은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이다.⁷²⁾

〈표 5—34〉 「정보통신망법」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1916657호) 2면.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 (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3.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 (접근권한의 범위 등)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나.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전파법」에 따라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업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의미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8호 및 제20호⁷³⁾).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접근권한 가이드라인⁷⁴⁾에 따르면,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블루투스, 와이파이, 테더링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나, 이동통신망을 활용하더라도 인공지능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기기(2G 이동통신단말장치 등)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서비스가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도 본 조항상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

1) 동의 대상 접근권한의 범위

‘접근권한’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7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주요 정의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677호, 시행 2025. 7. 22.)」으로 이관됨

74) 방송통신위원회(2017. 3.),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제1항). 이용자 저장 정보(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 등), 자동 저장 정보(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 기록 등), 단말장치 식별 고유정보(고유식별번호 및 MAC 주소 등), 입력·출력 기능(영상촬영 기능, 음성인식 기능,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기능 등)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

다만, 동의 대상 접근권한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앱)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설치된 기능에 한정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본문). 온디바이스 AI의 경우 대부분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와 정보 송수신이 없으므로 접근권한 동의가 불필요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제공자와 네트워크 통신이 있는 경우(더 복잡한 분석이나 연산 또는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서버 또는 에지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등)에는 접근권한 동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의 「ePrivacy Directive」 제5조 제3항은 우리나라 접근권한 동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기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유럽의 데이터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Local processing⁷⁵⁾이 발생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위 제5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⁷⁶⁾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 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앱(선택재앱)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통신, 촬영, 영상 및 음악 재생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접근권한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단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공급과정에서 설치한 인공지능 서비스 앱(삼성社 갤럭시 AI, 애플社 인텔리전스 등)을 ‘통신, 촬영, 영상 및 음악 재생 등’에 관한 앱과 동일하게 선택재앱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앱 사용 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능의 대중화와 혁신성으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자의 인공지능 기반 편의 기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앱은 이동

75) 서비스(앱) 기능이 이용자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것을 말함

76)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2024), “Guidelines 2/2023 on Technical Scope of Art. 5(3)of ePrivacy Directive”, p. 13.

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향후 판단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접근권한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⁷⁷⁾는 이루어져야 한다.

‘필수적 접근권한’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며, ‘선택적 접근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필수적 접근권한인 경우, ①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과 ② 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야 하며, 선택적 접근권한인 경우, ①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및 ② 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③ 접근권한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필수적 혹은 선택적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①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해 공개된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② 통상적인 이용자의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예상 가능성, ③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이다.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학습에 필요한 정보 또는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은 이용약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 접근권한으로 볼 수 있다.⁷⁸⁾ 또한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와 합리적 관련성’ 있는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 또는 기능도 필수적 접근권한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접근권한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추가 동의 없이 수집될 수 있어 규제 정합성이 필요하다.⁷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에서도 ‘합리적 예상 가능성’, ‘기술적 관련

77) 방송통신위원회(2017. 3.),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11면.

78)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 12.),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18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AI 학습 목적은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 이므로(추가 적법 처리 근거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79)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 12.),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18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신규서비스의 경우 추가적 이용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성'을 필수적 접근권한의 요건으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추가적 이용 규정과 유사한 요건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이용자 이익의 부당한 침해 여부 및 접근한 정보와 기능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추가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와 별개의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 또는 기능은 선택적 접근권한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항).

2) 이용자 관련 권고사항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리스크(정보 유출 및 원치 않는 의사결정 등)를 고려하여 필수적 접근권한 및 선택적 접근권한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기능의 항목, 그 이유 등에 대해 고지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를 권고한다. 서비스 접근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구현된 동의철회 기능을 활용하여 접근권한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가 필요하다.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정보 또는 기능에 접근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1호)이 부과된다.

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가능성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⁸⁰⁾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 각종 기능과 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 서비스 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나누어 받아야 한다.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80) 스마트폰·태블릿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되어 작동하는 앱(app)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 모듈을 말함

는(특히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이므로⁸¹⁾ 다른 적법 근거가 없는 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관련 동의를 징구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⁸²⁾과의 규제 형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운영체제 공급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⁸³⁾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앱 개발자)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 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접근권한 가이드라인⁸⁴⁾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는 접근권한과 관련한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앱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 요청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수 및 관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 요구는 특히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⁸⁵⁾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⁸⁶⁾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정보 및 기능을 처리하는 서비스이므로,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정

81) 방송통신위원회(2015. 8. 6.), “스마트폰 앱,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 막는다”, 보도자료.

접근권한 규제의 당초 논의도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음. 다만, 앱 권한 설정만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집(전송) 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82)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 8.),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7면.

83) 운영체제 공급자로는 구글(안드로이드OS), 애플(iOS) 등이 있으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는 삼성전자, 애플 등이 있음

84)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 8.),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7면.

85) IBM(2025), “What are AI agents?”, <<https://www.ibm.com/think/topics/ai-agents>>.

‘인공지능 에이전트’란 일반적으로 ‘워크플로를 설계하고 사용 가능한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 또는 다른 시스템을 대신하여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이해되고 있음

86) 장우림·조원선(2025). 《AI.GOV 해외동향》, 2025-1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특히 AI가 직접 인간처럼 컴퓨터를 사용해 웹 탐색 등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CUA, Computer-Using Agent) 또는 AI 챗봇 중에서도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활용한 외부 지식 정보 접근, 외부 시스템과 상호 작용, 목표 달성을 위한 연속 작업 처리 및 대기열 활용 등 발전된 프레임워크가 적용된 챗봇과 관련성이 높음

보처리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민감성(예. 개인금융 정보, 인증정보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

〈표 5－35〉 AI 에이전트 서비스 사례

구분	내용
OpenAI社의 AI Operator 서비스	OpenAI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웹 브라우저를 통해 다양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Operator’의 연구 프리뷰를 공개함. Operator는 온라인 양식 작성, 식료품 주문, 이미지 편집(뒀 생성) 등 반복적인 브라우저 기반 업무 처리가 가능함. 이는 GPT-4o의 시각적 인식 능력과 강화학습을 통한 고급 추론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 CUA(Computer-Using Agent)를 기반으로 작동함. Operator의 핵심 기능은 별도의 API 연동 없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직접 인식하고 상호작용하여 웹상에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임
Google社의 Gemini Live 서비스	Google은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Gemini AI와 실시간으로 시청각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Gemini Live’ 기능을 발표함. 이 기능은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의 정보나 카메라로 포착한 실제 환경의 다양한 장면에 대해 Gemini와 직접 대화하며, 맥락에 기반한 질문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안내, 정보 요약, 비교 분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

자료: 1) OpenAI(2025. 1. 23.), “Introducing Operator”, Product, <<https://openai.com/index/introducing-operator/>>.
 2) Isha Sheth(2025. 4. 7.), “5 ways to use Gemini Live with camera and screen sharing”, Google, <<https://blog.google/products/gemini/gemini-live-android-tips/>>.

라. 법령 개선 방향

필수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가 형식화되었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필수적 접근권한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 의무 삭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5-36〉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관련 개선 방향(안)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2.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3.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⑤(현행과 같음)

필수적 접근권한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고,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이용약관 또는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등을 통해 그 접근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참고로 2023년 3월 일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하여 당사자 간 계약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형식적 필수 동의 관행을 개선하였다고 평가된다.⁸⁷⁾ 다음과 같이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표 5-37〉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관련 개선 방향(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합리적 관련성,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87)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 9. 12.),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한다”, 보도자료.

이때, '필수적 접근권한 범위'의 유연한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수적 접근권한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 의무 삭제 시에는, 접근권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필수적 접근권한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 의무 유지 시에는, 접근권한 고지 내용이 간소화되는 사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제3절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제안

이번 절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사회적 쟁점 가운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해석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사안들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타법들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한다.

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가. 이슈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정보의 진위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딥페이크 정보를 명예훼손, 성범죄,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표 5-38〉 딥페이크 피해 현황

구분	'21	'22	'23	'24. 10월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건	1,913	3,574(87%)	7,187(276%)	10,305(439%) *9월 기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176	212(20%)	423(140%)	1,201(582%)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신고건	156	160(3%)	180(15%)	964(518%)

주: * ()은 '21년 기준 증가율

일반적으로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생성하거나 조작된 시청각 콘텐츠로서 특정 개인이나 사물을 허위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⁸⁸⁾ 구체적으로는 ①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 ②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③ 「정보통신망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

88) Ofcom(2024), “Deepfake Defences”, Discussion Paper.

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있다. 이와 관련된 해외 및 가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5-39〉 딥페이크 사례

구분	내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딥페이크 이미지 사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3년 3월경 성추문 은폐 관련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뉴욕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음. 이 시기에 그의 체포 장면을 묘사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었음. 해당 이미지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하여 한 저널리스트가 제작한 것이었으며, 제작자는 이것이 인공지능 결과물임을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결부되어 해당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가 실제 사건 기록으로 오인되었고, 다수 사용자에게 의해 공유·확산됨으로써 사회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딥페이크 정보로 인해 프로 운동선수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가상의 사례	프로 운동선수가 약물을 복용하는 등 실제 하지 않은 행위를 담은 딥페이크 이미지나 비디오가 제작·유포될 경우, 해당 선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 이러한 허위 정보는 스폰서십 계약이나 구단 계약 등 주요 비즈니스 관계의 파기 또는 무산으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음. 특히 선수 경력의 결정적인 시점에 딥페이크 정보가 악의적으로 유포될 경우, 추후 해당 정보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자료: 1) 《AP News》(2023. 3. 22.), “AI-generated images of Trump being arrested circulate on social media”,

〈<https://apnews.com/article/fact-check-trump-nypd-stormy-daniels-539393517762>〉.

2)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2026),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AI Action Summit.

3) D. Citron & R. Chesney(2019), “Deep Fakes: A Looming Challenge for Privacy,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California Law Review 107, 1753.

나. 규율 필요성

인공지능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는 데이터 출처 추적(Provenance Data Tracking) 방식과 합성 콘텐츠 탐지(Synthetic Content Detection) 방식이 있고,⁸⁹⁾ 현재 「인공지능기본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는 투명성 실행 방안만이 포함된다. 「California AI Transparency

89)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2024), “Reducing Risks Posed by Synthetic Content”, p. 3-4.

Act(SB942, 2024. 9. 19. 제정, 2026. 1. 1. 시행)의 경우 ‘매월 방문자 또는 이용자의 수가 1,000,000명 이상’이고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코딩·기타 방식으로 제작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무료 인공지능 탐지 도구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에 대한 시책 연구를 진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동법 제44조의4에 따라 제44조의2의 “합성영상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표시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더하여 합성 콘텐츠 탐지 도구의 제작 또는 배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참고로, 2024년 2월부터 딥페이크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바이트댄스 등)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가시적 위터마크 등 안전조치 마련 동참에 합의한 바 있다.⁹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표 5-40〉 「정보통신망법」 제43조의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조의2(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713호)

위 법률안과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자⁹¹⁾(생성형

90) 대한민국정부(2024. 5.),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10면.

91)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상 사업자의 투명성 의무 이행 결과로 이용자의 표시의무가 이행될 수 있다는 점,⁹²⁾ 다른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 금지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합성 성착취물 유통 금지 규정 등)에 의한 규제 가능성,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입법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NS 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 생성물 탐지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재고가 필요하다.

〈표 5-4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⁹³⁾ 제44조의11(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의 표시)

- ①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수범자(인공지능사업자)를 넘어 다른 사업자를 인공지능 관련 규제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인공지능 관련 입법 지침으로서도 기능한다.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92) 정준화(2024).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이슈와 논점》, 제2279호, 국회입법조사처.

93)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627호)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 발생 시점을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이상 인공지능 결과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판단할 수 있더라도 그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므로, 이는 인공지능사업자 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도 존재한다. 참고로, 중국 CAC는 2025. 3. 14.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라벨링 조치(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합성 콘텐츠 유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SNS 사업자 등)에게 인공지능 합성 콘텐츠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 입법 현황

1)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단,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가 가능하다.

〈표 5-42〉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 게시 행위 등이 금지되며, 그 외의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을 게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표 5-43〉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하거나 위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표 5-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일반에 공개된 답폐이크 성범죄정보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는 이를 즉시 삭제·차단해야 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와 조치 사항의 기록 및 보관 의무를 부담한다.

〈표 5-4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인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5) 제재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동 책임자는 필요한 조치 업무를 해야 하며,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된 절차운영 사항 및 조치 결과 등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또는 그 유통을 제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표 5-46〉 「정보통신망법」 제4조, 제4조의2 등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정보통신망법」 제4조의2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의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4조의2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합성영상등 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법령 개선 방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합성영상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제4조 및 제4조의2를 제44조의4와 연계하는 문언을 두어, 정부가 시책 마련 과정에서 고안한 정보보호 조치 또는 피해예방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권고하기 어려우므로, 법문언에 ‘제정’ 권고에 관한 문언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은 인공지능 투명성뿐 아니라,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고 피싱도 예방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3. 제4조의2에 따른 합성영상등
 -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시책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 또는 피해예방 조치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2. 알고리즘 선택권

가. 이슈

편향이 존재하는 데이터, 알고리즘⁹⁴⁾에 기초하여 도출된 인공지능의 추천 또는 결정은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행위, 차별행위 등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공정성⁹⁵⁾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⁹⁶⁾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중

94) 최지연(2017). “알고리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연구”, 《디지털사회 법제연구(V)》, 한국법제연구원.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된 유한개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 또는 명확히 정의된 한정된 개수의 규제나 명령의 집합”, “한정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으로 정의됨.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요소로서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

95) 손영화(2023). “AI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차별 없는 AI 사회의 실현 -”, 《한양법학》, 제34권 제3집, 한양법학회.

따라서, 인공지능 공정성은 “AI 모델의 예측 결과에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지를 평가하고 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96) 방송통신위원회(2022. 4.),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13면.

심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용자에게 미디어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노출시키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가 증가 및 고도화되고 있다. 관련 해외 이슈는 다음과 같다.

〈표 5-48〉 알고리즘 이슈 관련 사례

구분	내용
잘못된 SNS 알고리즘 추천을 개선한 사례	2023년 6월 월스트리트저널 및 대학 연구진의 공동 조사에서, 인스타그램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를 아동 성 착취물(CSAM) 판매 계정으로 적극 유도하고 불법 네트워크 형성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편향성이 확인됨. 해당 알고리즘은 문제가 있는 계정과의 일시적 상호작용만으로도 유사한 유해 콘텐츠 추천을 증폭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노골적인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CSAM 콘텐츠 접근을 용이하게 한 점도 지적됨. 이에 메타는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아동 착취 관련 계정 수십만 개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의 인종 및 성별 편향 사례	블룸버그(Bloomberg)는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으로 14개의 직업을 가진 5,100명의 사람의 얼굴을 생성한 후에, 이것을 피부 색상과 성별을 기준으로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나는지 분석함. 그 결과, 정치인, 법률가, 판사, CEO 등 고소득 직업군일수록 피부의 명암이 밝고 남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패스트푸드 직원 등 저소득 직업군일수록 어두운 피부톤의 여성의 이미지로 생성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남. 이는 실제 미국 내 인종 구성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일 뿐 아니라, 실제 고위직에서의 여성의 재현을 또한 매우 낮게 측정된 결과임

자료: 1) Jeff Horwitz & Katherine Blunt(2023. 6. 7.), “Instagram Connects Vast Pedophile Network”,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tech/instagram-vast-pedophile-network-4ab7189>>.
 2) Leonardo Nicoletti & Dina Bass(2023. 6. 9.), “Humans Are Biased. Generative AI Is Even Worse”, 《Bloomberg Technologies》.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23-generative-ai-bias/>>.

나. 규율 필요성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되는 정보는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훼손, 조작될 때 뿐만 아니라 편향성을 내포할 때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정보에 기반한 정보통신서비스는 정상적인 품질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이 특정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에도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알고리즘 공정성을 보장하는 보호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결국,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의 모델 개발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성이 보장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편향적·차별적 제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반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가치를 수호⁹⁷⁾”해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기본법」 제32조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에 한정하여 편향성 등의 위험 완화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5-49〉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6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⁹⁸⁾ 제32조의6(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명칭 2.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에 활용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기준 또는 방식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능적 오류·오작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시정할 책임을 부담하며, 그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하여 학습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모든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신고제를 운영하고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이어질 수 있다.

97) 방송통신위원회(2021. 6.),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I. 목적의 나.항.

98) 김홍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0001호, 회기 만료로 폐기)

다. 입법 현황

1)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및 시행하면서 인공지능 공정성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 5－50〉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⑦ (생략)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기술(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등) 개발·활용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이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표 5-5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제제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45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침에서의 정보의 신뢰성 확보 조치는 ‘침해 사고 등으로부터의 데이터 무결성’ 보호조치에 한하고 있고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편향성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표 5-52〉 「정보통신망법」 제45조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2.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과 관련된 시험·검사·인증 등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라. 법령 개선 방향

1)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개정 방안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데이터 편향성 방지 조치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 단계에서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 재가중(re-weighting), 재표본추출(resampling) 등의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편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⁹⁹⁾

민감정보와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대리 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변수 선택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간접적인 편향 유입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데이터의 출처, 수집 방법, 시기, 활용 목적 등을 명확히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도 데이터 신뢰성과 품질 보장에 중요하다.¹⁰⁰⁾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수범자를 고려하여 ‘데이터 편향성 방지 조치 사항’은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인공지능 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알고리즘에 대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¹⁰¹⁾

정부가 알고리즘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기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준수 사항을

99) Kris Shrishak(2024), “Bias evaluation”, Support Pool of Experts(SPE) Programme, EDPB, pp. 9-10; MAS(2022), “Veritas Document 3A. FEAT Fairness Principles Assessment Methodology”, p. 33.

100) 김운명(2019). “알고리즘과 법 - 알고리즘 차별에 따른 공정성 확보방안”, 《지능정보 사회 경제법 연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1)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9327호. 다만, 인공지능의 공정성은 데이터 및 알고리즘 측면의 공정성 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달성될 수 있으므로, 알고리즘 자율규제 도입 방안은 데이터 편향성 방지조치와 함께 추진되거나, 보다 상위 차원의 ‘인공지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표 5－53〉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44조의11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의 해결, 의사결정 및 그 지원, 업무의 수행 또는 장비·장치·기기 등의 운용을 위하여 기술(記述)된 연산, 규칙과 절차, 명령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말한다.

제44조의11(알고리즘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알고리즘을 설계·운용할 때 알고리즘의 안전성·설명가능성·투명성·견고성·공정성 등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알고리즘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데이터 편향성 완화와 더불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과정 및 결과 보정을 통해 알고리즘 수준에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기술적 접근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공정성 인식 알고리즘(fairness-aware algorithms)을 모델 학습 과정(in-processing)에 적용하는 방법과 이미 학습된 모델의 예측 결과를 조정하여 공정성을 개선하는 모델 출력 후처리(post-processing)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¹⁰²⁾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관련하여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불만 처리, 추천 서비스의 사전적·사후적 영향 평가, 지속적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괄”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¹⁰³⁾

다만,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영향도 또는 위험도를 사전에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고영향 AI’ 지정에 관한 사회적 숙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기반 추천서비스의 추천 기준 공개 방안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

102) Kris Shrishak(2024), “Bias evaluation”, Support Pool of Experts(SPE) Programme, EDPB, pp. 11-12.

103) 방송통신위원회(2021. 6.),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III. 핵심원칙 2. 공정성의 나.항

지능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투명성)은 불공정성으로 인한 차별 위험을 탐지하고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¹⁰⁴⁾ 설명가능한 AI(XAI) 기술의 도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서비스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추천 기준 공개’가 논의되고 있다.¹⁰⁵⁾

다만, 추천 기준 공개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또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의 인공지능사업자 책무(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등에 대한 설명방안의 수립·운영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의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추천 기준 공개는 국내외에서 경쟁법적 규율의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으로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처간 협의도 필요해 보인다.

〈표 5-54〉 온라인 플랫폼 관련 국내외 법안

구분	내용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19조(공시의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에 연관된 서비스로서 특정한 유사 서비스의 이용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3. 검색순위, 노출순위, 그 밖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표시 사항의 기초 자료 및 표시 기준 4.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수집·정리·분석·이용하는 정보 및 그 수집·정리·분석·이용의 목적 및 조건

104) 김윤명(2019). “알고리즘과 법 - 알고리즘 차별에 따른 공정성 확보방안”, 《지능정보 사회 경제법 연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즉,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를 통해 차별적이거나 악의적인 사용행태를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적 또는 사후적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알고리즘 공정성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음.

105) 방송통신위원회(2021. 6.),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III. 핵심원칙 1. 투명성.

구분	내용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19조(공시의무)	5. 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대상 정보 및 제공의 조건·방법 6.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충상담, 협의 등의 요청·처리에 관 한 절차 및 방법 7. 그 밖에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 조건 중 온라인플랫폼 이 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약관에 위 추 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주요 매개변수와 서비스 이용자가 이러한 주요 매개변수를 수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옵션을 평이 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명시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일본 「특정 디지털플랫폼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特定デジタルプラッ 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 び公正性の向上に一 する法律)	이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규정(제5조 제2항 제2호) ① 검색 표시 순위 결정에 이용되는 주요 사항(상품 가격이나 소비자 후기 등이 해당되며, 알고리즘의 공개는 제외) ② 해당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상품 등 구입 데이터(일반 이 용자에 의한 상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검색이나 열람 또는 상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상품 등 구입 데이터의 내용 및 그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조건 ③ ①, ② 외에 일반 이용자에 대한 해당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 조건 중 개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사항

자료: 이장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817호)

3.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를 이용한 피싱(phishing)

가. 이슈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피싱 위험 증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존 인물의 영상을 재현(딥페이크)하거나 실존 인물의 목소리를 구현(딥보이스)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상대방으로부터 금융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금융사기 등에 활용할 위험이 있다.

〈표 5-55〉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를 이용한 피싱 사례

구분	내용
딥페이크 이용 피싱 사례	유명인을 내세운 딥페이크 영상이 투자 사기에 활용된 사례가 SBS 뉴스를 통해 보도됨. 해당 사기는 유튜브 광고에서 박순혁 작가(일명 ‘배터리 아저씨’)의 딥페이크 영상과 함께 ‘99% 성공률 투자법’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함. 이후 네이버 밴드로 유도된 투자자들은 기상캐스터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인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음. 배우 조인성, 송혜교의 딥페이크 영상 또한 사기 홍보에 동원되었으며, 한 피해자는 해당 영상들을 믿고 4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총 6천 3백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됨
딥보이스 이용 피싱 사례	한 외국인은 한국을 여행 중이던 자신의 딸이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받고 송금을 요구받았음. 그러나 이후 경찰 확인을 통해 해당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딸의 안전 또한 무사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범죄 조직은 피해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더불어 ‘딥보이스’ 기술로 자녀의 음성까지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됨

자료: 1) 《SBS뉴스》(2023. 12. 27.). “조인성·송혜교’ 영상 보고 투자했는데…실체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78196〉](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78196).

2) 《세계일보》(2024. 11. 7.). “감금된 딸 영상, 알고 보니 딥페이크… 진화한 보이스피싱”.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07516880〉](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07516880).

나. 규율 필요성

1) 피싱 관련 현행법의 한계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피싱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금지규정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하는 사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후적 대응 체계만으로는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스스로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정보 수집 행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탐지 도구 개발 및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의2).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탐지 도구에 관한 정부 시책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의 자

율규제를 연계할 필요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탐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식별 기술의 한계와 탐지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가 될 수 있다.

3)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의 ‘속이는 행위’에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행위’를 명시하는 방안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를 “피싱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주체를 속여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고,¹⁰⁶⁾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이지만 하면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딥페이크 또는 딥보이스 기술을 통해 유무선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피싱, 파밍, 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을 착오에 빠트려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명시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 입법 현황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조항은 피싱 등의 수법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¹⁰⁷⁾

〈표 5-56〉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

106)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2074963, 2017나2074970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 판결

107) 「정보통신망법(법률 제7812호)」 제정·개정이유 참조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가. 접속경로의 차단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법령 개선 방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합성영상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제4조 및 제4조의2를 제44조의4와 연계하는 문언을 두어, 정부가 시책 마련 과정에서 고안한 정보보호 조치 또는 피해예방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권고하기 어려우므로, 법문언에 ‘제정’ 권고에 관한 문언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5-57〉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¹⁰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3. 제4조의2에 따른 합성영상등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108) 본 개선안은 전술한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투명성 항목의 개선안과 동일함

으며, 이 경우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시책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 또는 피해예방 조치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결 론

모든 규제와 공공적인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으며, 이는 산업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산업 규제는 경제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급과 소비 구조를 유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방송·미디어·통신 영역의 규제 역시 이러한 목적 아래 형성되어 왔다. 본래 공적 주체에 의해 제공되던 방송·미디어·통신 역무가 민간에 개방되면서, 필수 서비스가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공되도록 시장 행위자들을 조정·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후생의 증대를 지향해 왔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전통적으로 사업 규제, 경쟁 규제, 설비 규제, 콘텐츠 규제, 그리고 직접적인 이용자 보호 규제로 구분되어 왔으나, 이들 규제 유형은 수단의 차이에 불과하다. 간접적인 시장 구조 조정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도모하든, 이용자 보호와 직결되는 의무를 시장 행위자에게 직접 부과하든, 그 궁극적 목적은 이용자가 적절한 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유지하는 데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자, 독립행정위원회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방미통위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 증진,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관련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핵심적인 책무로서, 정보통신 분야 전반에 산재한 이용자 보호 규범을 종합적으로 해석·운용하는 정책적 기반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배경 위에서,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정책 영역 전반에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법적·정책

적 혼란에 주목하였다. 인공지능 그 자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접적 규율 대상이 되는 ‘역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실의 다수 인공지능 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기존 통신서비스와 결합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통신관계법령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어떠한 범위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 보호의 공백 또는 규범 적용의 과잉이라는 양 극단의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고도화 환경에서 정보통신 분야 이용자 보호 법령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법령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기술·서비스 변화에 따라 적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쟁점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법적 문제들을 기존 통신관계법의 규범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조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면적인 신규 입법 이전에도 활용 가능한 규범적 대응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본 법령안내서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단순한 법령 나열이나 형식적 해설을 넘어, 정보통신역무 제공자들이 이용자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동시에 법적·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적 참고 도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와 그 성과물인 법령안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 법령의 해석 가능성과 정책적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 서비스 규율 체계의 정립과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실증적·규범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 8.).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_____ (2024. 12.).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12.).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4. 7.).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경과
및 결과』.
- 관계부처 합동(2024. 11.).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 국회(1985).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제12대 국회 의안번호 120162.
_____ (20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서”, 의안번호 제2014186호.
- 김윤명(2019). “알고리즘과 법 - 알고리즘 차별에 따른 공정성 확보방안”, 《지능정보사회
경제법 연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김재윤(2024).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의 책임귀속 주체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대한민국정부(2024. 5.).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 류부곤(2024).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 방송통신위원회(2017. 3.).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_____ (2019. 3.).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 _____ (2021. 6.).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 _____ (2022. 4.).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 _____ (2024. 12.). 『청소년 보호 업무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 보호 업무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5. 2.).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손영화(2023). “AI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차별 없는 AI 사회의 실현 -”, 《한양법학》, 제34권 제3집, 한양법학회.

이창범·황창근·정필운(2021).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

정준화(2024).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이슈와 논점》, 제2279호, 국회입법조사처.

최지연(2017). “알고리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연구”, 《디지털사회 법제연구(V)》, 한국법제연구원.

초록우산(2024). “디지털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연구보고 2024-4.

장우림·조원선(2025). 《AI.GOV 해외동향》, 2025-1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황창근(2009).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_____(2015). “청소년 보호와 인터넷규제”,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해외 문헌]

Ahmad, S. F., Han, H., Alam, M. M., et al.(2023).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human loss in decision making, laziness and safety in education. Humanit Soc Sci Commun, 10, 311.

Citron, D., & Chesney, R.(2019). “Deep Fakes: A Looming Challenge for Privacy,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California Law Review, 107, 1753.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2026).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AI Action Summit.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2024). “Guidelines 2/2023 on Technical Scope of Art. 5(3)

of ePrivacy Directiv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2024. 8. 8.). “FCC Proposes First AI-Generated Robocall & Robotext Rules”.

<<https://www.fcc.gov/document/fcc-proposes-first-ai-generated-robocall-robotext-rules-0>>.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2024. 10. 28.). “Robocall Response Team: Combating Scam Robocalls & Robotexts”. <<https://www.fcc.gov/spoofed-robocalls>>.

IBM(2025). “What are AI agents?”, <<https://www.ibm.com/think/topics/ai-agents>>.

Kris Shrishak(2024). “Bias evaluation”, Support Pool of Experts(SPE) Programme, EDPB.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2022). “Veritas Document 3A. FEAT Fairness Principles Assessment Methodology”.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2024). “Reducing Risks Posed by Synthetic Content”.

Ofcom(2024). “Deepfake Defences”, Discussion Paper.

_____(2024. 11. 4.). “Open letter to UK online service providers regarding Generative AI and chatbots”.

<<https://www.ofcom.org.uk/online-safety/illegal-and-harmful-content/open-letter-to-uk-online-service-providers-regarding-generative-ai-and-chatbots>>.

OpenAI(2025. 1. 23.). “Introducing Operator”,

<<https://openai.com/index/introducing-operator/>>.

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n.d.). “Character.AI Lawsuits”.

<<https://socialmediavictims.org/character-ai-lawsuits/>>.

[기타 문헌]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 9. 12.).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한다”,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5. 5. 13.). “방통위, 외국인 및 법인 이동전화 선불폰 명의도용 등 134만건의 위법행위 제재”, 보도자료.

- _____ (2015. 8. 6.). “스마트폰 앱,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 막는다”, 보도자료.
- _____ (2015. 8. 21.). “방통위, 알뜰폰 불법 텔레마케팅 강력 제재”, 보도자료.
- _____ (2021. 7. 21.).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보도자료.
- 《BBC News 코리아》(2021. 12. 29.). “아마존 인공지능, 10세 소녀에게 위험한 챌린지 조언 논란”.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807502>>.
- 《SBS뉴스》(2023. 12. 27.). “‘조인성·송혜교’ 영상 보고 투자했는데…실체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78196>.
- 《세계일보》(2024. 11. 7.). “감금된 딸 영상, 알고 보니 딥페이크… 진화한 보이스피싱”.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07516880>>.
- 《한국일보》(2023. 5. 24.). “미국 공중보건당국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치명적 위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415330003722>>.
- 《AP News》(2023. 3. 22.). “AI-generated images of Trump being arrested circulate on social media”.
 <<https://apnews.com/article/fact-check-trump-nypd-stormy-daniels-539393517762>>.
- Alasdair Pal & Cordelia Hsu(2024. 11. 29.). “Australia’s under-16 social media ban sparks anger and relief”,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australian-pm-albanese-says-social-media-firms-now-have-responsibility-protect-2024-11-28/>>.
- Brendan Pierson(2024. 10. 23.). “Mother sues AI chatbot company Character.AI, Google over son’s suicide”, 《Reuters》.
 <<https://www.reuters.com/legal/mother-sues-ai-chatbot-company-characterai-google-sued-over-sons-suicide-2024-10-23/>>.
- Clare Duffy(2024. 12. 10.). “An autistic teen’s parents say Character.AI said it was OK to kill them. They’re suing to take down the app”, 《CNN》.
 <<https://edition.cnn.com/2024/12/10/tech/character-ai-second-youth-safety-lawsuit/index.html>>.
- Geoffrey A. Fowler(2023. 3. 14.). “Snapchat tried to make a safe AI. It chats with me

about booze and sex”,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3/03/14/snapchat-myai/>>.

Isha Sheth(2025. 4. 7.). “5 ways to use Gemini Live with camera and screen sharing”,

Google. <<https://blog.google/products/gemini/gemini-live-android-tips/>>.

Jeff Horwitz & Katherine Blunt(2023. 6. 7.). “Instagram Connects Vast Pedophile Network”,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tech/instagram-vast-pedophile-network-4ab7189>>.

Kyle Dunphey(2024. 9. 11.). “Judge blocks Utah’s social media laws, writing they likely violate the First Amendment”, 《Utah News Dispatch》.

<<https://utahnewsdispatch.com/2024/09/11/judge-blocks-utah-social-media-law/>>.

Leonardo Nicoletti & Dina Bass(2023. 6. 9.). “Humans Are Biased. Generative AI Is Even Worse”, 《Bloomberg Technologies》.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23-generative-ai-bias/>>.

[판례 및 결정례]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도797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710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10노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2074963, 2017나2074970(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701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08426 판결.
방송통신위원회 제2008-41-223호.
방송통신위원회 제2009-47-181호.
방송통신위원회 제2010-17-074호.
방송통신위원회 제2010-34-145호.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13-099호.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04-005호.
방송통신위원회 제2021-13-044호.
방송통신위원회 제2021-59-233호.
법제처 2021. 8. 2.자 법령해석 안전번호 21-0379.

● 저 자 소 개 ●

조 성 은

- 러거즈대학교 인터넷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 정 욱

-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실장

이 으 뜸

- University of Virginia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시 직

-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제 선

-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석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전 민 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I공공정책전공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이 세 인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학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선 지 원

-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호 상

-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 창 우

-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진 혜 원

- 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책연구 25-2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2025년 12월 일 인쇄

2025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

인쇄 인성문화
